

민주 여성

민주여성 제13호 (반년간) / 1992년 10월 23일 발행
등록번호 : 사-1546 / 1991년 4월 27일 등록/발행인 : 조화순
발행처 : 한국여성단체연합 100-120 서울 중구 정동 1-23
전화 : 738-2883 / FAX : 722-9244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주소록

거창여성회 0566)43-5561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39-2 아림신문사내(670-800)

경남여성회 0551)44-9009
마산시 오동동 17-135 가고파오피스텔 504호(630-470)

공해추방운동연합여성위원회 0551)44-9009
서울시 종로구 충신동 100 보덕약품빌딩 4층(700-424)

광주전남여성회 062)368-8090
광주시 서구 월산동 1016-23(502-230)

기독교여민회 02)865-8090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86-3 3층(152-052)

대구여성회 053)421-6758
대구시 중구 동인2가 125-1 장원빌딩 5층(700-422)

대전충남여민회 042)257-3534
대전시 중구 대흥동 213-2 영인빌딩 4층(301-010)

민족미술협의회여성미술연구회 02)618-6636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아파트 902동 103호(423-030)

부산여성회 051)87-7262
부산시 진구 부전동 394-18 9/3(614-030)

서울여성노동자회 02)867-0516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여성복지회관내(152-059)

수원여성회 0331)45-1564
수원시 권선구 교동 22-3 3층(441-130)

인천여성노동자회 032)863-2659
인천시 남구 도화3동 52-20 12/7(402-060)

전북민주여성회 0652)86-3457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113-6
홍지서림앞 3층(560-020)

주부아카데미협의회 02)469-0572
서울시 성수동 성수2가 3동 299-173(133-123)

제주여민회 064)46-9259
제주시 용담2동 644-5 공인빌딩 2층(690-042)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02)838-3296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152-055)

충북여성민우회 0431)63-8124
청주시 사직1동 265-28 양용길내과 1층(360-101)

한국여성의 전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112호(110-470)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114-9(120-180)

한국여신학자협의회 02)708-4217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113호(110-470)

한국여성연구회 02)535-8191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132-15 남부농협 2층(156-08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02)745-4943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110-470)

함께하는 주부모임 053)425-7701
대구시 중구 동인4가 61번지 미봉빌딩 4층(700-42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준회원) 02)568-6426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4-12 안순빌딩 302호(135-282)

민주여성

목차

- 2 / 권두언
여성의 한표로 세상을 바꾸자!
- 4 / 특집 I
어떻게 대선을 맞이할 것인가?
- 7 / 특집 II
여성정책안
- 14 / 기획 I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와 한·일관계
- 17 / 기획 II
제네바에 펼쳐진 정신대 할머니의 증언
- 21 / 초점 I
외국인 불법고용, 어떻게 볼 것인가?
- 26 / 초점 II
성폭력특별법안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하여
- 32 / 보고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평양토론회의 성과와 전망
- 38 / 인터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영순회장을 찾아서
- 40 / 탐방
한국여성연구회를 찾아서
- 41 / 여연활동소식
- 44 / 회원단체 활동소식
- 53 / 여성운동일지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서관여기
성평등
도서관
여기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이 경 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여성의 한표로 세상을 바꾸자!

올해의 대선이 갖는 의미

오는 12월에 있을 14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아니 이미 '대선시기'라는 말이 지면을 덮을 정도이니 중요한 시국임이 분명하다.

텔레비전을 켜면 '대 전'식의 보도 일색이고, 제2의 6·29와 같은 성격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4대 총선을 치루면서 우리는 3당 합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장이었던 총선에서의 승리가 대통령선거 등 권력재편기에 민주정부 수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다. 그리고 총선의 결과는 '민자당의 참패, 민주당의 선전, 국민당의 약진, 그리고 국민의 승리'로 요약되었지만 반면 운동진영의 목소리는 커다란 성과를 남기지 못하였다.

우리는 지난 87년에도 대선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 경험에 대하여 여러가지 평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87년 당시 대선에 비해 올해의 대선이 우리의 운동에 있어 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것은 민자당 합당으로 이루어진 지배세력이 장기집권을 피하고 있고, 올 대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정치적 성과를 갖는가에 따라 90년대 우리의 운동의 전로를 여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 또한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있어 어떻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여성운동의 과제인 것이다.

여성의 눈으로 대선을

87년처럼 되지도 않을 일 신경써야 헛고생이라는 식의 체념, 그 결과는 뻔할 것이라는 비판, 혹은 제도장치권의 일이라 치부하는 방관을 버리자.

우리는 4·19혁명, 80년 민주화의 봄, 그리고 87년 6월 항쟁 등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바 있고, 이들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대선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또한 대선국면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의 요구를 모아 여성정책을 제출하고, 여성정책의 실현을 위한 활동, 공정보도, 선거감시 등의 공명선거운동 등을 통해 조직과 의식이 고양되는 계기가 된다 하겠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여성들의 올바른 참여와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구의 절반이자 1,400만 유권자인 여성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무관심하여 부동표로 존재하거나 민자당의 표밭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은 우리 여성들을 각 정당의 일회용 선심공약의 집중대상이 되게 할 뿐, 실제 여성들의 권익향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올 대선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는 앞다투어 여성정책을 공약사항으로 내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에게 절실히 필요로 한 것을 실현하도록 하는 힘과 조직을 강화시켜 나가는 실천활동을 대선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의 요구를 모아 여성정책을 제출하고, 여성정책의 실현을 위한 활동, 공정보도, 선거감시 등의 공명선거운동 등을 통해 조직과 의식이 고양되는 계기가 된다 하겠다.

여성들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첫째, 우리 여성들의 요구들을 모아 한 목소리로 힘있게 알려나가자.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유권자들의 의식을 높여나가자.

둘째, 후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표의 행사에 힘쓰자.

우리의 한표 한표가 정권을 바꾸어 낼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후보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

셋째, 이웃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이웃을 조직하고, 부정선거감시운동을 조직하자.

여성의 힘으로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첫째, 우리 여성들의 요구들을 모아 한 목소리로 힘있게 알려나가자.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유권자들의 의식을 높여나가자.

여언에서는 지난 총선시기에 선전하였던 여성정책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여성정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노동, 여성농민, 여성의 복지, 성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올바른 법 제·개정요구안을 갖고 토론하고 선전해 나가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겠다.

둘째, 후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표의 행사에 힘쓰자.

국민의 자유기본권보장, 지자체전면실시, 대통령중간평가, 초당적 정국운영, 지역차별철폐 등을 내건 6·29 선언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공명선거를 외쳐대면서도 실상은 엄청난 금권과 타락으로 치루었던 여당의 행태는 한전군수의 양심선언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의 한표 한표가 정권을 바꾸어 낼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후보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2의 6·29 내지는 선심용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구국의 결단이 되어 하루아침에 변신하는 지조없는 후보, 부동산투기와 향락산업 등에서 때

돈을 번 후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후보, 국정을 책임있게 수행해 낼 수 없는 무책임한 후보는 결코 여성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낼 수 있는 민주화를 실현할 후보가 결코 아니다.

셋째, 이웃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이웃을 조직하고, 부정선거감시운동을 조직하자.

요즘 동네 부인들 사이에 일당 몇만원을 받고 모당 후보를 위한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다. 선거운동을 부업으로 여기고 찍을 때만 잘 찍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리고 이런 그릇된 일을 하지 않도록 이웃을 조직해야 한다. '돈을 때어먹지 않고 맑은 일에 열심히 해서 여성조직원을 선출한다'는 여당 스스로의 고백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타락선거에 도움을 주지 않도록 이웃을 만나자.

우리는 지난 총선시기에 민주후보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여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여성들이 민주후보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약하고, 사람방 간담회에서 정성스레 부침개를 만들어 대접하고, 타 후보의 금품살포와 유언비어 등을 고발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뜻있는 내용들을 선전하는 활동들을 해왔고, 이런 여성들의 활약으로 민주후보 당선의 기쁨도 맛보았다.

이제 우리 여성들의 작은 실천과 힘이 모여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와 힘을 하나로 모아내자. 그리하여 올 연말에는 승리의 환호성이 이 땅에 퍼져나가고, 새해에는 새로운 전진을 향한 힘찬 발돋움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어떻게 대선을 맞이할 것인가?

나영희/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1. 어떻게 대선을 맞이할 것인가?

대통령선거가 불과 2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준비정도는 여전히 미약하지만, 그 어느때보다도 대선에 모두 힘을 합쳐 통일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대동단결의 기운은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대동단결의 기운은 대선이 주는 정치적 계기점과 의미를 충분히 확보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의미있는 역할을 통일적으로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역사의 뒤안으로 처지고 말 것이라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뼈아픈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선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정권교체 및 정치세력간의 세력개편이라는 중요한 계기점이라는데 있다.

이런 중요한 국면에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보다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대선이 주는 정치적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확보해내야 한다.

따라서 대선정국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본자세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국민적 힘에 의해 한번도 획득해 보지 못한 정권교체 실현을 위해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제 민주세력이 총단결하여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족민주운동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질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마련하며 구체적인 대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성운동 역시 이러한 기본 관점을 견지해 나가면서 대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통일된 방침과 통일 대오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되어진다.

대선정국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본자세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국민적 힘에 의해 한번도 획득해 보지 못한 정권교체 실현을 위해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제 민주세력이 총단결하여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족민주운동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질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마련하며 구체적인 대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성운동 역시 이러한 기본 관점을 견지해 나가면서 대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통일된 방침과 통일 대오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되어진다.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는 민주대개혁 창출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민주대연합 구축활동에 충실히 복무한다.

여성유권자의 낙후된 정치의식을 제고하고 대선시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여성정책 요구를 결집해내기 위한 대중정치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실현하도록 한다.

대선과 관련한 활동이 조직의 강화 및 조직외연의 확대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대선방침의 기본적인 구도는 민주 대 반민주 대립구도로 나가되, 이것과 더불어 민주적인 여성정책 대 반여성정책 대립구도를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2. 여연의 대선방침의 목표

1)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는 민주대개혁 창출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민주대연합 구축활동에 충실히 복무한다.

해방이후 계속된 독재정권의 집권은 한국사회의 자주, 민주,통일을 가로막아 왔으며 이 속에서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과제는 한번도 제대로 수행된 적이 없는 뼈아픈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또한 여성의 삶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인간다운 삶과 자주적인 통일국가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참다운 민주정부의 수립은 항상적인 국민의 염원이었다.

따라서 92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우리의 우선적 목표는 반민자당전선을 강화함으로써 정권교체를 가능케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

2) 여성유권자의 낙후된 정치의식을 제고하고 대선시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여성정책 요구를 결집해내기 위한 대중정치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실현하도록 한다.

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 과제는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기본 목표와 관점을 견지하면서 실현되어야 한다. 여성운동의 올바른 정치세력화의 목표는 바로 민주정부수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고 볼 때 그것의 구체적인 행보는 바로 여성유권자들의 낙후된 정치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유권자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낙후된 정치의식은 우리나라 정치발전

과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따라서 대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여성유권자 대상의 대중정치교육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런 조직화 과정에서 올바른 여성정책을 대중적인 요구로 결집하고 결집된 대중적인 요구를 정치적인 요구로 전화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기본적 동력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다.

3) 대선과 관련한 활동이 조직의 강화 및 조직외연의 확대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대선시기 방침의 기초와 방향, 대응구조

대선을 둘러싼 현재의 정치적 대립구조는 민자당을 중심으로 한 반민주세력과 양심적인 제민주세력간에 반민주정권의 연장이나, 민주정부수립이나를 평가분하는 대결의 양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대선방침의 기본적인 구도는 민주 대 반민주 대립구도로 나가되, 이것과 더불어 민주적인 여성정책 대 반여성정책 대립구도를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때문에 92년 여연의 대선투쟁은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중심으로 '민주'의 내용을 제기하고 요구해 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올바른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민주'의 내용을 제기하고 확보해 가는 것을 기본 기조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연내부에서는 대선시기의 선거대책반의 구성을 통하여 여성운동의 통일된 방침과 각각의 활동을 공유토록 해야 한다.

4. 주요사업의 범주

1) '민주'의 내용을 확보해 내기 위한 민주대개혁안의 선전 및 생활상의 요구투쟁과 제도개선 투쟁에 올바른 여성정책적 관점을 결합한다.

금융실명제 실시, 토지공개념 실현, 민생안정, 환경개선, 노동법,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제반 악법개혁, 국방비 삭감과 복지확대, 남북합의서의 진실한 이행 등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를 요구하고 노동기본권 보장, 전교조 합법화, 수입개방 저지와 농산물 제값받기, 도시빈민생활 보장 등의 각계 각층의 생활상의 요구를 바로 여성정책적 관점에서 받아내는 활동을 전개한다. 즉 '민주'의 내용속에 여성고용, 여성복지, 물가안정, 주택문제, 각종 법·제도적 차원에서 여성권익향상, 양성평등교육, 여성의 정치·사회참여확대 등의 고리를 확보해냄으로써 여성이 민주대개혁안 요구투쟁에 주체적 세력으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사업내용은 여성의 관점에서 민주대개혁안의 내용을 선전해내기 위한 대중정치교육을 회원단위에서 일상화하도록 하며 이러한 대중정치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2) '올바른 여성정책안'의 선전과 정철화

여성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여성정책적 관점에서 올바른 여성정책안(모성보호, 탁아, 가족법, 세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에서의 여성권의 확대사안, 정신대, 성폭력문제, 매매음방지법, 향락산업근절, 여성의 정치참여, 교육,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고용확대, 임시직·시간제 여성노동자의 제도개선 요구, 여성농민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확대 등)을 선전하고 이를 선거쟁점화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여성부문단위에서 정책토론회 및 공동의 대응실천과제를 적극 조직화하도록 한다.

3) 민자당의 실정과 부정비리의 폭로 국민당 정책의 허구성 폭로

수서비리, 정보사태 매각사건, 고속전철, 영종도, 이동통신 등의 비리와 경제정책 실패 등 6공정권의 실정과 부정비리의 폭로, 민자당 3당 합당이 결과한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통일적 실정들에 대한 선전작업들을 적극 전개한다.

국민당은 재벌당이며 '철새' 여당정치인들이 모인 정당으로서 정책이 상호모순되고, 허구적인 공약을 남발함

으로써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이며, 언제든지 민자당과 손잡을 수 있고 민주정부의 실현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정당임을 폭로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사업내용은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민자당정책의 실정 및 국민당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할 수 있는 자료 및 반여성적 행보들을 수집하고 회원들의 구체적인 교육자료로 사용되도록 한다.

4) 부정선거 반대 및 공명선거 쟁취활동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획책하는 정권의 기도는 수차례 있어 왔고 특히 대선이 직접적인 정권이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금년의 부정, 관권, 금권선거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기도를 막고 공명선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선거중립내각의 철저한 실시, 안기부법 개정운동,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 연기군 관권부정선거의 제수사, 공무원의 업정중립을 위한 관련법의 즉각적인 개정운동 및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활동에 적극 결합한다.

특히 선거시기마다 여성유권자들을 금품수수, 향응의 대상이요, 박수부대로만 인식되어온 관행을 타파하고 바로 여성유권자들의 한표가 세상을 바꿔내는 주요 표발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부정선거방지의 파숫꾼으로 올바른 투표행위의 세력으로 전환시켜내기 위한 관련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사업의 내용은 부정선거 방지 및 공명선거 쟁취활동을 위한 '여성유권자 행동지침'전단을 제작, 배포하며 공정선거감시단활동에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결합한다.

5. 결 어

대선시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시기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행여나 인식적 차원에서만 끝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대선방침의 구체적 사업범주들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유권자들의 정치행위들을 민주대연합과 민주정부수립이라는 기본적 관점과 목표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범주에 대한 세부적 사업내용이 보다 더 창의적으로 고민되고 개방되어야 한다.

우리의 창의적인 노력만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로 구체화될 것이다.

여성 정책안

이 여성정책안은 여연 정책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활동가와 전문가가 모여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다. 단기간에 많은 내용을 검토하고 작성하느라 부족하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이 고정되거나 이 수준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활동에 따라 정책의 수위가 향상될 것을 희망하며 부족하나마 민주여성에 전 재한다(편집자주).

우리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는 제 11조 “모든 국민은 ... 누구든지 성별 ...”라며 남녀평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사회적 노동 속에서는 전반적인 차별대우로 고통받고 있다. 성인여성의 45% 이상이 사회적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차적 자리는 가정’이라는 인식은 여성의 사회적 노동의 비중과 중요성을 은폐하고 있다.

노동여성은 낮은 임금과 모성보호를 요구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 승진·승급에서 차별당하고 있으며, 저농산물가격과 외국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황폐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여성농민은 농업생산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과중한 노동을 담당하면서도 경제적 궁핍과 무소유, 봉건적 억압과 사회적 천대 속에 놓여 있다.

날마다 늘어가는 성폭력의 심각성은 세계3위라는 성폭력 범죄율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구조에 대한 배려 또한 아주 낮은 수준이다.

1)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보장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1) 현황과 문제점

「여성의 일할 권리와 평등한 대우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전후 휴가를 90일(12주)이상 확대 실시하고 임신중 야간근무를 전면금지한다.

국·공립 탁아소의 설비비율을 확대하여 탁아의 공립성을 확보한다.

임시직·시간제 노동자, 가내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며 용역업은 전면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농협, 수협, 축협 등 농어민 관련단체의 여성농어민의 조합원 자격을 보장하기 위해 농, 수, 축협 관련법을 개정하여 여성농민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최근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직과 고용불안정 상태는 여성에게 있어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전자, 섬유, 봉제, 신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장에 속해 있어 휴폐업, 업종전환, 자본철수, 하청계열화에 의한 대량해고와 감원이라는 고용불안정 상태에 처해있다.

또한 취업여성의 25% 정도의 여성이 임시직 인력으로 고용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단신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30만원이하의 임금을 받는 여성이 전체의 73.7%로 나타나고 있어 저임금직종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별, 학력별, 직급별 분리호봉제에 의해 차별임금을 제도화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의 남녀임금비교를 보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6.3% 정도로 낮아 있다. 이러한 남녀의 임금격차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승진에서 배제되고 결혼퇴직이나 임신퇴직 등의 관행에 의해 일정정도 구조적으로 정착되고 있는데,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승진기회의 박탈, 단순반복업무, 모성과피 등은 여성이 평생직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농민에 있어서도 농촌인구의 절반이상(50.7%)을 차지하며, 이중 직접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어민은 600만중 약 150만명이나 되어, 농업생산에서 여성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고 실제로 여성노동력이 없이는 농업생산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업생산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 여성농민은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은 그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획득하지 못하

고 경제적 궁핍과 무소유, 봉건적 억압, 사회적 천대 속에 신음하고 있다.

(3) 주요정책

① 노동여성들의 완전고용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회적 보장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첫째,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완전 고용되도록 노동부 산하 각 지방행정관청에 남녀고용평등감독관제를 도입, 실시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노동사무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둘째, 여성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와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철폐를 위해 사회교육의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여성인력을 인건비를 고용하는 여성고용할당제가 공공기관 및 전문직종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감원,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임시직·시간제 노동자, 가내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며 용역업은 전면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넷째, 취업여성들의 임금을 생활임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확대 실시하며, 남녀분리호봉제를 철폐하고 전산업, 전업종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제를 적용하여 남녀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다섯째, 취업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의무화하고 유급교육, 휴가권을 보장한다.

② 여성농민의 농업생산 주체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첫째, 여성농민의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해 농산물에 대한 적절한 가격보장 정책을 실시하며, 수매되는 농산물의 생산비를 책정할 때 자가노동과 고용노동의 노임을 남녀동등하게 적용한다.

둘째, 여성농민 농업노동의 기계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농기계의 개량과 자동화 및 여성노동과정의 기계화를 위한 종합연구기관을 마련하고 광범위한 보급을 위한 지원금의 재원을 확보하며, 여성농어민에 대한 전문농업기술, 영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농업, 수렵, 축협 등 농어민 관련단체의 여성농어민의 조합원 자격을 보장하기 위해 농, 수, 축협 관련법을 개정하여 여성농민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넷째, 정부의 전업농 지원, 후계자 양성사업에서 여성농어민에게 일정정도의 지분을 배정하여 여성농어민을 농업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다섯째, 여성농어민들이 하고 있는 식품가공산업의 제조, 판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여섯째, 여성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유통활동을 지원한다.

③ 일하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임시직, 시간제, 일일고용도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실시를 의무화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배우자 연금제도를 실시한다.

둘째,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남녀배우자 혜택기준과 부양자 인정 기준에서의 남녀차별을 철폐하고, 산전후 관리에 대한 의료조치를 확대 적용한다.

2)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1) 현황과 문제점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모성은 사회적 기능이고 사회적 책임이다. 따라서 국가가 일하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모성보호조항은 주로 기업주에게 권고, 또는 의무화하고 있어, 국가와 사회의 모성보호에 대한 책임을 일개 기업주에게 전가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여성을 위해,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탁아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탁아소의 설치, 운영보다는 기업이나 영리탁아시설 설치만을 계획하고 있어, 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는 47%의 미취학 아동이 엄마가 일하는 동안에 혼자 방치되어 있어 탁아에 대한 요구가 절실함에도, 농번기 탁아소의 실시와 운영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87년 이후 405개의 농어촌학교가 폐교되고 457개는 분교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통학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교육환경은 열악해 지고 있으며,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농민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2) 주요정책

①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각종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노동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전후 휴가를 90일(12주) 이상 확대 실시하고 임신중 야간근무를 전면 금지한다. 또한 남녀불문하고 산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의 유급휴가를 위한 사회보험제를 실시하며,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를 경우 자녀간병휴가를 실시한다.

둘째,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여성과 여성농민의 경우 국가가 출산수당을 지급하며 육아지원금을 지급하고 병원비를 면제한다.

셋째, 농어촌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모자보건센터, 산모원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② 일하는 여성의 자녀양육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노동여성의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탁아소의 설치범위를 남녀노동자 상사고용 150명 이상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는 보육시설투자에 대한 대출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병설 탁아를 의무화한다.

둘째, 저소득층 및 농어민 자녀학생에게 학자금 및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일하는 여성의 평생, 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탁아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민간탁아소에 인건비(아동 15인당 교사 1인 비율)와 교재교구교육비를 지원하고, 아동보육료를 차등(년소득, 주택여부,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 시설비 융자 및 지원을 확대

(공유지 무상임대)한다.

둘째, 국민학생, 중고등학생을 위한 보육시설과 공부방, 도서관, 문화공간을 설치, 운영한다.

셋째, 초·중·고교에 무상의무급식제를 실시한다.

넷째, 노동자 밀집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탁아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국·공립탁아소에서 영아탁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영아탁아의 연령을 12개월로 낮추고 비율을 확대한다.

다섯째, 국·공립 탁아소의 설치비율을 확대하여 탁아의 공립성을 확보한다.

3) 전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현황과 문제점

「전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호가 제정되어 있다」

전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지만 그 어느 분아보다 정치영역에서의 소외는 심각하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적절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배려가 없다.

각종 사회진출이 높아지고 정치참여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남성중심의 정치관행, 왜곡된 정치문화, 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 국회, 지방의회로의 진출 등은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하위에 집중되는 등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8년 통계에 의하면 5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18,761명중 여성은 88명으로 0.5%에 지나지 않는다. 또 정부내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1989년 5.5%에서 1990년 9.0%로 최근들어 약간씩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여성 국회의원 수를 보면 11대 9(3.3%), 12대 8(2.9%), 13대 6(2.0%), 14대 3(1% 미만)으로 그나마 오히려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2) 주요정책

① 소외된 계층(여성, 노동자, 농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명부식비례대표제와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의 참여를 일정정도 보장하기 위해 정당활동에 있어서는 임명직, 선출직을 막론하고 각 급 수준에서 2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며, 정부 각 기관에서는 각 위원회의 각 급 수준에서 20% 이상 할당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직급별로 20% 이상 할당하되 상위직(5급이상)은 10% 이상 할당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각 행정조직과 각 위원회에 현행 교육공무원의 수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③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관련정책을 통합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신설하고 예산과 집행력을 부여하며, 각 부처(특히 노동부, 교육부, 보사부, 총무처)와 지방행정처에 여성관련 부서(국, 과)를 설치하고 담당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 입안을 위해 국회 상임위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건강하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현황과 문제점

「가족관계에 있어서 불평등한 차별이 남아있다」

1989년 개정 가족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불리하고 차별적인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음으로 인해 아직도 가족생활에서 남녀간의 차별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가사노동이 우리 사회의 재생산영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가사노동은 항상 무보수 내지 낮은 가치로 취급되어 왔다.

(2) 주요정책

① 가정내에서의 평등한 삶을 위해 현행 가족법과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첫째, 유명무실한 호주제를 폐지하며 자녀의 성을 부모 중 선택할 수 있게한다. 또한 친권행사와 서자입적시 여성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치며 동성동본제를 폐지한다.

둘째, 부부간의 상속,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따른 중여세를 폐지하며, 주택구입시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남녀동등하게 적용한다.

셋째, 주부의 사망, 상해시 보험금과 손해배상을 선정할 때 현재 일용노동자 수준이 아닌 가사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기준으로 선정한다.

소외된 계층(여성, 노동자, 농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명부식비례대표제와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정내에서의 평등한 삶을 위해 현행 가족법과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올바르게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미혼모의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성폭력과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현황과 문제점

「성폭력과 성의 상품화가 전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
 이다」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은 세계3위이며, 한해동안 발
 생하는 강간사건만도 무려 32만건(89년 신고율로 추산)
 으로 추산되고 있다. 성인여성의 94%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고, 실제로 76.4%의 여
 성이 가벼운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7.7%의 여성
 이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사회
 에서 성폭력은 더 이상 여성개인의 운이 나쁜 일이 아니
 라 노소를 불문하고 여성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성폭
 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몰살롱, 카페, 요정, 안마시술소, 사우나, 피페이
 발소, 터키탕, 러브호텔 등의 향락산업은 오늘날 전국에
 45만개 이상이나 되며, 이들 업소의 연간 매출액이 연 4조
 억원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전반의 풍토가 성의
 상품화와 성폭력범죄의 온상지가 되어감에 따라 성폭력
 범죄는 인신매매, 강도강간, 어린이 성폭행, 근친강간,
 아내구타, 직장내 성적 희롱, 강제된 매매춘 등의 양상으
 로 다양화되고 날로 흉폭해지고 있다.

이러한 성폭행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문화와
 이중적 성규범, 생산적인 제조업보다는 소비향락산업의
 이윤율이 더 높은 비정상적인 경제구조와 불평등한 분배,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는 독재정권의 3S정

책에 의한 향락피폐문화의 발흥, 남녀차별적이고 이중적
 인 현 성교육과 성차별교육 등의 원인에 의해 날로 증가
 되고 있다.

(2) 주요정책

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올바르게 처벌하기 위
 한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현행법에서 정조에
 관한 죄로 되어있는 성폭력 범죄의 법적 개념을 성적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죄로 규정하며,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성폭력범죄의 성립여부를 피해자가 말이나
 의사표현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나 자유의사에 의해 동
 의하지 않은 모든 강제적 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첨단과학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신종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세분화시켜, 성폭력범죄의 처벌대
 산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한 성폭력이 은폐되거나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고죄를 폐지하고 범집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
 요한 증거가치로 채택하며 관련 여성단체나 기관이 제시
 하는 자료도 증거가치로 채택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신속
 한 증거확보를 위해 보건소, 종합병원 내에 성폭력전담부
 서를 설치하며 성폭력피해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비협조
 로 시립, 국립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
 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수사 및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피해자가 원하
 는 경우에는 관련 여성단체 및 기관의 방청을 허용하여야
 한다. 성차별적 시각이나 통념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입장
 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성폭력전담부서를 검찰, 경찰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돕는 전문상담기관 및
 긴급구조기구 설립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로 하되, 특히 관련 민간사회단체의 성폭력대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②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를 추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향락피해업소의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음란물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③ 성차별적이고 퇴폐적인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성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방지를 위해 민생치안체제를 확립하고 각 시·도 경찰청에 성폭력여성상담실을 확보하고 시·군·구별 경찰서에 성폭력담당행사 특별반을 설치운영하며, 여형사기동대를 확대, 개편하여 대여성범죄에 관한 전담부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매매음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으로 되어 있는 법률 매매음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매매음방지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6) 평등한 주체확립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현황과 문제점

「양성에 대해 올바른 가치와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교육에 의해서만이 양성은 자유롭고 유능한 사회적인 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릴 때부터 고정된 남녀의 역할과 성차별적인 교육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인격자, 양성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미래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양성평등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향락피해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남녀 이중구조적 성교육이 아닌

바른 성윤리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2) 주요정책

①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어릴 때부터 평등한 인간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첫째, 역사적 여성인물을 발굴하여 교과서에 제시하며 성차별적인 교과과정을 철폐한다. 또한 교과서의 사진과 교과서의 내용, 삽화를 재검토하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 편찬에 여성이 일정비율로 참여한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및 각종 개발과정에 여성교육전문가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 때부터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평등한 인간상을 확립한다.

둘째, 교과과목에 여성학을 필수로 하여 교사들에 대한 양성평등의식을 강화하고, 교육부, 교육청, 각급 학교관련 교육행정가에 대한 연수교육과정에 의식개선과정을 포함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개선한다.

셋째,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성교육과 성상담을 전담하는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이 교사의 교육을 여성담당기관에서 담당한다. 기존 초·중·고 성관련 교과과정 내용을 재검토하고 개정한다.

넷째, 각급 교육행정가의 여성비율을 최소 20%를 보장하여 교육행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인다.

② 교육기회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철폐하여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고대 입학시 성별제한을 철폐하고 특수학교의 여성입학 제한을 철폐하고 입학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 사회교육에 있어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한다. 동단위마다 사회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하고 국·공립 연수원 교육에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며 여성직업훈련원의 설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1.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보장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 1) 노동여성들의 완전고용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회적 보장제도를 확립한다.
- 2) 여성농민의 농업생산 주체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한다.
- 3) 일하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2.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 1)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한다.
- 2) 일하는 여성의 자녀양육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한다.
- 3) 일하는 여성의 평생, 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탁아정책을 실시한다.

3. 전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건강하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가정내에서의 평등한 삶을 위해 현행 가족법과 관련법을 개정한다.
- 2) 미혼모의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5. 성폭력과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올바르게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한다.
- 2)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 3) 성교육을 의무화한다.
- 4) 매매음을 예방할 수 있는 매매음방지법을 제정한다.

6. 평등한 주체확립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

- 1)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어릴 때부터 평등한 인간상을 확립한다.
- 2) 교육기회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철폐하여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3) 성교육을 정규적인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 4) 사회교육에 있어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와 한·일 관계

김우석/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70년대 초 이후 일본은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 전지구적인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본의 독점자본은 미국이나 서구의 시장까지도 포함하여 사실상 지구의 모든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의 모든 지역에 대한 일본의 활동이라는 이면에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고, 이 지역의 중요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가고 있다. 특히 현재 담보상태를 견고 지키는 하나, 벼타적 경제블록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럽공동체(EC), 그리고 새로운 경제블록인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창설은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특별한 의미' 부여는 최근 냉전의 해소와 미국의 급격한 지위하락으로 인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과 맞물리면서, 아시아 정치·군사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

이 바로 PKO협력법안의 통과로 나타나는 일본의 급격한 군사대국화의 조짐이다.

비록 80만을 자랑하는 한국군보다 인원면에서는 현저히 뒤지는 25만여 명의 자위대이나 첨단무기체제와 막강한 경제력은 일본을 세계 제3, 4위의 군사대국으로 만들고 있다.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군사대국화라는 과정으로 진행되기에 이를 지켜보는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에 대항하여 싸웠던)인접국은 경계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의 묵인하에 진행되는 일본 군사 대국화

일본의 군사력 증강 문제는 70년대 후반 이래로 눈에 띄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60년대 이후 극동지역에서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해온 구

소련에 대응하고자 하는 미국이, 자신의 상대적인 국력의 약화를 메꾸려는 역할분담에서 진행된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은 "세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따르는 필요한 방위부담을 미국만이 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부유한 동맹제국은 자국 주변의 지역 및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역에 대한 방위부담을 대폭적으로 분담하고...그 정도 부유하지 않은 동맹제국 및 우방도 또한 보다 부유한 나라들로부터의 안전보장원조의 증가라는 도움에 의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1983년 「미군사정세보고서」)고 되어 있다.

요컨대 미국은 강한 군사력에 의해 세계를 미국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지배하려 하지만 그만큼 힘이 없었기에 동맹국 중에서 부유한 나라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자신의 전략을 완성시키려 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분담론에 의해 시작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냉전이 해소된 이후 세계평화의 공헌이라는 명목하에 새로운 전기를 맞으며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전기가 된 것이 지난 페르시아만 전쟁 때부터이다. 당시 1백30억달러의 막대한 전비를 지출했던 일본은 미국 주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으며,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제력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행사에 큰 제약이 있음을 절감해야 했다. 그 후 적극적인 양태를 띠며 나타난 것이 바로 PKO협력법안의 통과와 그를 통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정치대국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과거의 전범국이라는 오명이고, 이를 극복하면서 자신의 군사정치적 위상을 재고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절대적 협조와 국제적 공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미야자와 일본 수상은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안보기구와 관련하여 미-일의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시아의 안전보장구조 설정 문제에 대해 ▲분쟁이나 대립의 해결을 위한 관계국의 협력 ▲보다 광범위한 아시아 전역의 정치적 대화라는 두 가지의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유럽안보협력회의와 비슷한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미국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미국 참여 보장 속의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체제의 고려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국제무대에서의 지위상승에 동의하고, 앞으로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될 정치군사안보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안보체제에는 미-일의 주도 속에 한국이 편제된 것은 물론이다.

일본 PKO협력법안 통과 의미

이번에 통과된 PKO협력법안의 핵심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있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PKO협력법에 따른 자위대의 파병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는 다른 '국제적 안전보장'에 따른 것으로 결코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그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소위 '오자와 조사회 보고서'이다. 이 조사회에서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냉전 종식으로 지역분쟁은 오히려 늘어날 우려가 적지 않으며, 앞으로 일본은 경제력만이 아닌 안전보장면에서도 발언권 등 정치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UN의 안전보장기능을 강화하고 그 활동에 협력, 참여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더 나아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확

보하고 UN헌장의 '옛 적국조항'을 삭제시킴으로써 UN에서 일본의 지위를 확실히 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즉 '국제적 안전보장'이라는 개념도 입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통해 실적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UN상임이사국 진입 등 명실상부하게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의 구태를 벗어버리고 정치, 군사, 경제 대국으로 완전 복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과거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전지구적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을 상기할 때, 일본이 UN의 옷을 입고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려는 의도는 아시아에서 맹주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비록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자본수출과 상품수출로 급격히 격상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지역의 대부분의 국가가 정치군사경제면에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로 인해, 경제력을 통한 영향력 확대에 한계를 느끼고 정치군사대국화의 길을 한발짝 한발짝 내딛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해외파병을 금지한 국회결의는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었고, 전수(專守)방위 개념도 광도까지의 1천 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전략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일본 해군의 작전지역이 광도까지를 항상적으로 포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비 1%의 한계도 이미 미국의 요청으로 87년에 무너졌다.

일본의 방위청은 자국의 방위비를 세계 6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는 '88년 연차보고서'

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국방비 개념에 의하면 일본은 미소에 이어 세계3위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4조5천5백원으로 우리나라 국방비의 3배이상이다. 여기에 일본의 첨단무기가 덧붙여질 경우 일본의 방위비는 이미 '자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고 있다.

일본의 PKO 파병과 한국

PKO협력법안이 통과 되었을 때 보여준 각국의 반응은 일본의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북한과 중국, 베트남 등이 강도 높은 반대성명을 발표한 데 반하여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가 찬성성명을 발표

일본의 군국주의가 바로 한반도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바 있다. 2차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본출자국으로, 기술제공자로서, 그리고 주요시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의 경제적 힘이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 정부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곧이어 한국군의

PKO파병을 결정하는 등 오히려 일본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의 PKO파병론자들이 이른바 친한파 세력이라는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일본의 군사정치대국화가 이른바 미·일간의 긴밀한 역할분담론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는 것에 있다.

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이 한-미-일 삼각안보의 완성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라는 것을 상기하고, 한국이 미국에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쌍무적 한-미-일 관계의 재편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은 한미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 창설된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던 작전지휘권이 큰 변동이 없는 한 내년 중에 환수될 예정인데, 이는 한·미 간에 새로운 군사관계가 모색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제기되는 아시아·태평양 안보체제 속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 체제의 주력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과 군국주의화 하는 일본, 그리고 미국이 될 것은 쉽게 예상되는 바이다.

머지않아 캄보디아에 자위대가 평화의 깃발을 들고 입성하게 된다. 일본의 외교관 출신으로 UN캄보디아임시행정기구(UNTAC)대표를 맡고 있는 아카시 야스니 UN사무차장은 지난 5월 미야자와 수상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아시아에서 캄보디아 외에 PKO의 출동이 필요한 곳은 미얀마, 카슈미르 그리고 한국"이라고 한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바로 한반도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네바에 펼쳐진 정신대 할머니의 증언

—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의 강제 종군위안부 문제 대책 활동 —

신혜수/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제협력위원장

지난 8월 9일부터 23일까지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이하 정대협)는 4명의 대표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에 파견하여 정신대문제를 제기하고 돌아왔다. 본인이 혼자 먼저 출발하고, 일주일 후 8월 16일에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 정진성 정신대연구회회장, 그리고 실제 피해자인 황금주 할머니, 이렇게 세분이 합류하였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처음 참석하는 것이라 그 구조를 모르는 상황에서, 또 준비할 시간도 너무 부족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떠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한다. 2주간의 짧은 일정동안에 우리 대표단은 「인권소위원회」에서 2번의 공식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유엔주재 기자단과의 회견, 그리고 민간단체들을 초청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신대문제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특히 배상문제 특별조사관과의 회합에서는 복환을 함께 방문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긴 하였지만, 조사관들의 한

국방문 수락을 받아내었다. 이는 앞으로의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정대협에서 정신대문제를 국제기구에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 초부터이다. 정신대문제를 알리는 문건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사례, 재판 소장등을 번역하고 이들 문건을 함께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동시에 정대협 공동대표인 이효재교수가 2월에 미국 뉴욕에 가서 유엔의 관계 실무자를 만나고 정신대문제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였다. 또한 유엔에서 발언할 수 있는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가진 민간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신대 문제를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외에도 다른 많은 단체에 편지와 자료를 보낸 바 있다.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구조

이번에 우리가 참석한 유엔 소위원회의 공식명칭은 「소수민족 차별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 제 44차 회의로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인권

위원회」에 속한 소위원회이다. 인권위원회는 매년 2월, 그리고 소위원회는 매년 8월에 모인다. 유엔의 모든 기구가 다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과, 유엔의 회원국가, 전문기구,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참석한다. 현재 인권소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은 26명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요르단, 의 5개국이 들어있고, 전체 26명중 여성위원은 7명이다(미국, 영국, 나이지리아, 그리스, 콜롬비아, 알제리아, 모로코). 매 회의를 시작할 때 위원들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는데, 의장과 1인 또는 그 이상의 부의장,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른 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제44차 회의의 의장은 캄바의 위원인 마티네즈씨가 선출되었다.

회의장의 구조는 의장단이 앉은 연단이 정면에 있고, 의석이 반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맨 안쪽줄이 위원석, 그 다음 몇줄이 알파벳순으로 회원국가 대표를 좌석이고, 그 다음이 ILO,



WHO, IMF 등과 같은 전문기구 및 다른 국제기구로 배열되어 있다. 민간단체 대표들은 맨 끝의 2줄에 앉도록 되어 있다. 모든 발언은 유엔 공식언어(영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만 하게 되어 있고, 헤드폰을 통해서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회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연장해서 저녁 9시까지 하기도 한다. 회의에 관련된 자료는 모두 문서실에서 얻을 수 있고, 매일 매일 회의순서, 전날의 진행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제공된다. 회의 내용과 모든 발언은 요약되어 나중에 유엔의 공식문서로 발간되는데, 우리의 발언도 수록되었다.

한 의제가 상정될 때마다 대개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의제에 대한 사무국 담당관의 소개가 있는 후 전문위원의 발언, 국가대표의 발언, 국제기구 대표의 발언, 그리고 민간단체의

발언순으로 진행된다. 발언시간은 전문위원이 35분, 국가대표는 20분, 그리고 민간단체 대표는 10분까지 허용된다. 이중 전문위원은 어느 때든지 발언할 수 있으며, 한 위원이 다시 발언할 때에는 두번째는 허용시간이 줄어든다. 민간단체는 한 의제에 대해 한 단체가 한 번씩만 발언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발언권(consultative status)을 얻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정대협이 경우 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원해주는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이름으로 참석하였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 참가한 모든 전문위원, 국가대표, 민간단체대표들의 이름이 수록된 명부에도 우리들의 이름은 세계교회협의회에 참가자로 기재되어 있다. 민간단체에서 회의에 참석할 대표들의 명단을 사무국에 제출하면 이름표를 만들어 주며, 유엔에 드나들 때는 항상 이 이름표를 부착해야 한다. 의제에 대한 발언신청은 회의장안에 배치된 실무진에게 마감기간내에 하면 순

서대로 접수되어 10분간 발언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인권소위원회에 제기된 정신대 문제

내가 8월 9일에 갔을 때는 이미 회의가 시작된지 일주일여 지난 후였다.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열리는 기간동안(8월 3일부터 28일까지) 2개의 중요한 회의가 겹쳐 일정을 잡기가 매우 복잡하였다. 정대협이 주최하는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가 8월 10~11일에 서울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또 이효재 공동대표의 평양방문이 9월 13일로 잡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단기간만 머물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인권소위원회가 다루는 20여개의 의제중에서 정신대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관련의제는 「의제 16: 현대형 노예제(Contemporary forms of slavery)」와 「의제4: 심각한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Compensation

to the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이었다. 의제16을 위해서는 소위원회 전문위원 26명중에서 5명으로 「실무회의」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회의」의 의장 겸 보고자는 요르단의 알카소네씨이다. 실무회의는 소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5월 4일~13일에 이미 모였고, 그 보고서가 이번 소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실무회의때 우리의 정신대문제는 이미 제기되었었다. 이효재 공동대표가 미국에서 접촉했던 단체중의 하나인 「여성의 인신매매 반대 국제연합」을 통하여 「국제철폐연맹」이라는 단체에 의해 정신대문제가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의 문제로 거론되었다. 또한 일본이 전후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는 일본인 도즈카 변호사가 「국제교육발전기구」라는 단체의 대표로서 정신대문제를 거론하였다. 이렇게 정신대문제가 이미 실무회의에서 거론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권소위원회에서 정신대문제가 논의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은 이미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회의가 시작된 지 이미 한 주일이 지난 후였다. 그동안 이미 세계교육발전기구, 세계철폐연맹, 한국정부, 북한정부에서 정신대 문제에 대해 발언하였다. 남·북한 모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한국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 미리 발언신청을 해 두었기 때문에, 나는 도착한 바로 그 다음날 의제 16에 대해 발언할 수 있었다.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정신대,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정대협에서 신고전화를 설치한 일, 신고한 피해자를 통해 나타난 정신대의 실상, 그리고 정신대의 강제동원에

일본 정부와 군부가 직접 간여했다는 것을 밝히고, 인권소위원회에 이를 위한 조사단을 설치해 줄 것 등의 5개항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의제 16에 대한 토의의 말미에 공식답변을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였다. 즉, 이미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 사죄했고, 이에 대한 처리는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어 법적 책임은 없으나 인도

**“전쟁중의 매춘에 관한
모든 입수된 정보를
배상문제 담당
특별조사관에게
제출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기로”**

적 견지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언급중이라고 하였다. 의제 16에 대한 이 모든 논의에 대해 인권소위원회는 14일에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중 정신대문제에 관해서는 “전쟁중의 매춘에 관한 모든 입수된 정보를 배상문제 담당 특별조사관에게 제출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즉 배상을 위해 공식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효재 선생님과 정진성 교수, 황금주 할머니가 도착한 후, 8월 18일 오전 11시 15분에는 유엔주재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미국 ABC와 일본의 지지통신, 교도통신 등에서 1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

하였다. 황금주 할머니가 피해당사자로서 증언하고, 정진성교수가 정신대 실상에 대한 전체적 설명, 그리고 이효재 교수가 정대협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 온 교포팀이 한국인 강제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달아 회견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5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질의 응답까지 합쳐 30분이 소요되었다. 황금주 할머니는 증언 시간이 너무 짧아 속이 상하여서 눈물까지 흘렸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ABC기자의 요청으로 따로 30분 정도 인터뷰를 하였다.

민간단체 공청회는 점심시간 2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50명분의 점심을 샌드위치로 준비하였는데 90여명이 참석하는 상황을 이루었다. 「국제교육발전기구」와 우리가 합동으로 개최하였는데, 우리는 기자회견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신대문제를 제기하고, 그쪽은 강제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당사자인 황금주 할머니가 과거의 쓰라린 경험들(나의 통역을 거치긴 하였지만) 직접 증언한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재일교포 팀이 제기한 강제노동문제는 상대적으로 죽어버린 감이 있었다. 이렇게 큰 행사 2개를 하루에 치른 후, 이제 남은 일은 의제 4인 배상문제에 대한 토의였다.

의제4를 위해서는 인권소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네델란드의 국제법학자 반 보벤교수를 1989년에 배상문제 특별 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올해 3번째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내년에도 마지막 보고서가 나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정신대문제

를 어떻게 보느냐가 배상문제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8월 20일에는 점심에 그를 초청하여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지원을 호소하였다. 그는 전에 유엔 인권센터의 소장을 역임할 정도로 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가 올해 12월에 일본에 올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를 한국으로 초청하였다. 처음에는 일정이 바쁘다고 하면서 재차 거절하였으나, 간절히 청하여 그의 승낙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단, 북한도 방문하는 조건하에 한국에 오겠다는 단서를 붙였는데, 남북한에게 공정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다.

의제4에 대한 토론이 8월 21일 시작될 때, 반 보덴 교수는 배상문제 특별조사관으로서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국의 정신대 문제에 언급하여, 이미 인권소위에서 결의한대로 전쟁중의 매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할 것이며 이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후 다른 민간단체로부터 축하를 많이 받았다.

이효재 교수는 배상문제에 대한 발언에서 정신대문제는 일본이 여성의성을 노예화한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일본은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그들은 인도에 관한 죄, 노예방지에 대한 규약, 일본이 1932년에 비준한 강제노동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역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근로정신대의 문제도 제기하여 강제저축을 당한 많은 한국인 노

동자들이 저축한 것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에 대한 배상, 저축금의 반환 등의 문제를 일본정부에 촉구할 것을 소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효재 공동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가슴졸인 에피소드가 있다. 우리는 처음에 나온 소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맞추어 의제 4에 대한 토의 직후 8월 22일 토요일 아침에 귀국하도록 날짜를 정해 놓았는데 일정이 자주 늦어지고 있었다. 금요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주 월요일은 비공개로 위원들끼리 토의하도록 되어 있었고, 발언해야 하는 이효재교수는 평양토론회 때문에 23일 일요일까지 꼭 귀국해야 한다는 전갈이 와 있는 상태고, 귀국하는 비행기편은 1주일에 화·토 두번 밖에 없고 하는 사정이었다. 우리의 발언 순서는 민간단체중 6번째로 접수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될 것 같아 소위원회 실무진에게 부탁하고 또 첫번째로 발언하게 되어 있는 단체의 양해를 얻고 하여 발언순서를 첫번째로 바꾸었다. 그런데 막상 금요일 오후 3시에 의제 4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전문위원들이 자주 발언을 하는 바람에 오후 6시 폐회전에 발언기회가 안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가슴을 졸였다. 결국 오후 5시 15분에 민간단체 순서가 되어 발언을 무사히 끝낼 수 있어서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앞으로 남은 문제들

이번 제네바에서의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정신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들은 일본으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를 하게 하고, 정신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국제적으로 더욱 여론화하며,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1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배상문제 특별조사관의 한국방문 조사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 2월의 인권위원회에서 이번 소위원회의 결의안이 논의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작업하는 일 등, 유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일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정부는 정신대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되면 필수로 망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 될 입장에 놓여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된대로 일본적십자사에 기금을 조성하여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돈을 받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그르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돈을 받으면 정신대는 성적 노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돈을 벌러 매춘하러 간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대 할머니의 사정은 그 돈을 받아야 될 정도로 절박하다. 할머니들 중에는 극빈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정신대의 상처로 인해 건강이 엉망인 분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 할머니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일본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만 1965년의 한일협정과 같은 실책을 되풀이 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불법고용, 어떻게 볼 것인가?

김혜진/서울여성노동자의 사무국장대행

지난 92년 9월 19일, 종로성당에서는 '외국인 불법고용,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회, 서울노동운동연구소, 한겨레민주노동자회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의 발제를 중심으로 현재 10만명이 넘게 추산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국내불법고용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외국인노동자 고용의 배경

1) 소위 '인력난'이 외국인고용의 근거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상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국내취업과 관련된 채류자격은 취재, 기술, 상용, 투자, 교육, 고용, 흥행 등 7개 부문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이 경우에도 국내노동력으로 대체가 가능한 분야에서의 외국인 취업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연수' 외에도 10만명이 넘게 추산되는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고용의 근거로 자본가와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이른바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이다.

중소제조업에서 일정하게 인력부족현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노동부의 「고용전망조사보고서」를 보면, 1991년 3월을 기준으로 하여 25만명의 부족현상(5.45%)을 보이고 있다. 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현상은 특히 생산직이 8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섬유 의복 및 가죽업(77,648명 부족, 39.4%의 부족율)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그리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었던 업종들에서 인력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난은 정부와 자본가들이 이야기하듯 "노동자들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3D)을 기피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회사일수록 임금이 낮고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 아닌가?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력난의 실상은 첫째, 수출주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를 운영해오며 있어 산업구조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불안정성, 둘째, 노동력의 구성이 고학력화, 고령화, 주부화

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탁아소 설치, 정년의 연장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 셋째, 건설업과 소비서비스업의 기형적 팽창으로 상대적 고임업종으로의 노동력 이동에 그 본질적 원인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1989년에서 1991년까지 3년 동안 1만개 업체에서 30만명이 실직되었으며, '91년 6,100여개의 회사가 도산하고 '92년에도 1,800여개의 회사가 도산했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고용불안정 속에서 업종별로, 규모별로 나타나는 인력부족의 현상은 결국 정부의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의 실패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91년과 '92년에 인력정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인즉, 국내의 잠재노동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력정책은 그 발상에서부터 실효성에 이르기까지 온갖 모순투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을 살펴보자. 정부에서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잠재여성인력은 주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이들의 활용을 위해, 탁아소 등 보육시설의 확보, 시간제근로자침의 마련, 기업 차원의 인력알선업 허용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중, 보육시설의 문제를 보면, 정부는 '95년까지 공단 및 저소득층 인접지역에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을 2,010개소로 늘려나간다고 하지

전반적인 고용불안정 속에서 업종별로, 규모별로 나타나는 인력부족의 현상은 결국 정부의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의 실패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정부의 인력정책은 결국 '현재 임금상승을 주도하는 서비스직종에 주부나 고령노동력을 불안정하게 고용하여 임금수준을 낮추어, 남은 인력이 제조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다름아닌 것이다.

만, 이 계획으로는 도시 저소득층 탁아수요인구의 15%밖에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의 예산으로는 계획한 탁아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워 그 실현의지와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이 지침에는 시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의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방안과 시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가정주부들에게 가사노동과 사회적노동의 이중부담을 전제로 한 불안정고용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업차원의 인력알선업 허용방안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취업정보 부족을 정부의 알선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쓰지 않은 채 사적 기업에게 허용하여 그렇지 않아도 고용이 불안정한 여성들에 대한 용역의 중간착취를 정당화시켜주는 방안이 될 뿐

이다.

여성잠재노동력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대상으로 한 고령노동력 활용방안도 마찬가지로의 문제들을 안고 있고, 더욱이 이들 주부나 고령노동력이 과연 인력부족현상을 보이는 업종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부의 인력정책은 결국 '현재 임금상승을 주도하는 서비스직종에 주부나 고령노동력을 불안정하게 고용하여 임금수준을 낮추어, 남은 인력이 제조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런데 그나마 이 잠재노동력의 활용에는 이에 걸맞는 여건마련(탁아소 설치 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 그리하여 자본과 정부가 그대신 생각했던 묘안이 바로 '값싼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다.

2) 정부정책으로서의 외국인불법고용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은 동남아시

이들 불법체류자들의 입국과 취업의 증가가 정부의 연수제 확대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은, 결국 연수제는 외국인 불법취업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결국 이 시기는 겉으로는 '연수제 확대'를 통해 실제로는 불법고용을 확산한다는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의 기초가 드러난 시기라 할 수 있다.

아 임금의 7-10배에 달해 외국인력 유입의 객관적 조건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만으로는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이 가능하지 않다. 국가마다 많은 제약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적극적 요구와 정부의 정책이 없이 자연스런 채 외국인노동력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자본과 정부가 외국인고용을 추진해왔던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외국인고용이 추진되었음을 살펴보자.

〈제1시기〉 중소자본가의 외국인력 수입 요구에서 '91년초 정부의 광부 수입론이 나오기까지 정부가 외국인 고용에 관해 공식으로 언급한 것은, 1991년 2월, 노동부장관이 강원도 태백지역 탄광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부의 수입'을 거론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이것을 거론하기까지 1988

년과 1989년에 해외개발공사에 일본과 선진국의 외국인력고용제도의 검토를 맡겼던 점으로 보아 외국인고용 문제를 상당기간 동안 고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정부의 정책적 연구를 기초로 외국인고용에 대해 최초로 타진해본 시기라 볼 수 있다.

〈제2시기〉 '91년 말 연수제 확대 실시까지 외국인노동력 수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의가 전개되던 상황에서 정부는 연수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1991년 10월,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회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선상에서 외국인취업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1년 11월, 「법무부 훈령」을 통해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제도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의 기존 규정인 종업원의 1% 내 연수제 시행을 5-10%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업체도 이전에는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합작 투자

업체와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업체에 한정시켰으나, 주무부처 장관이 추천하여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연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확대하였다. 결국 말 그대로의 '연수'가 아닌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 고용'의 길을 쓴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고용정책을 연수제의 실시만으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최근 2-3년전부터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단기자격자의 입국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불법체류자들의 입국과 취업의 증가가 정부의 연수제 확대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은, 결국 연수제는 외국인 불법취업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결국 이 시기는 겉으로는 '연수제 확대'를 통해 실제로는 불법고용을 확산한다는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의 기초가 드러난 시기라 할 수 있다.

〈제3시기〉 1992년 6-7월 자진신고 실시까지 기술연수제의 확대실시는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확대보다 더 큰 규모로 외국인의 불법고용을 가져왔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속에서 「불법 체류 및 취업 외국인 자진신고」를 실시했다. 이 기간동안 신고한 60,000여명의 외국인 중 6,750명에 대해서만 강제출국조치를 실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체류를 허가해주었다.

자진신고한 불법 외국인을 모두 출국시키지 않고 취업을 묵인한다면, 이러한 단속을 실시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는 정부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국내에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

노동력의 규모를 파악하여, 정부의 적절한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를 두고, 정부가 외국인고용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 없다거나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오히려 정책으로서 외국인 불법고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외국인 불법노동력의 유입을 일정기간 묵인하다가 필요시 단속을 강화하여 강제출국을 되풀이하는 방법으로 자국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노동력을 조정하고, 불법취업이라는 빌미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무권리상태를 강요해온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흉내 내려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출국과 입국의 순환을 통해 계속 저임의 외국 노동력을 이용하고, 의료보험 등 이들에게 드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국내에 실업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불법고용의 잇점을 심분 이용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2. 외국인 불법고용이 국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 임금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343,000원으로 노동부가 조사한 국내 노동자의 평균임금 589,500원에 비해 58.2%에 해당되는 낮은 임금이다. 더구나 이들의 경우, 전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76%에 달하고, 상여금이나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70~80%에 이르

는 것을 볼 때, 국내노동자들과의 임금차이는 훨씬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낮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은 국내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나마 같은 현장에서 임금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위협은 마찬가지가 된다.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재 노동조건이 열악한 업종과 규모에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들 업종에서 국내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현재의 저임금 그대로라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의 정당한 상승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불법의 형태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러한 저임금구조의 유지를 더욱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다.

2) 고용시장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고학력, 남성 중심의 사무전문직 고용시장과 저학력, 여성중심의 생산직 고용시장이 분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노동자들간의 분리와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점차 국내 노동자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외식이 변화하면서 이런 차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저학력, 저임금의 여성노동자들이 정당하지 못한 성차별을 거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싸움이 일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서는 적급의 단순화, 단

일호봉체계의 확립을 위한 싸움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은 이러한 움직임을 무력화시키고, 고용시장의 이중구조를 온존,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학력과 성을 매개로 한 차별취위의 이중구조에 더하여 국적(인종)으로 인한 차별을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으로 고용되는 현실은, 고용시장에 이중취위의 문제까지도 제기한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법고용은 주로 불법 취업브로커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임시직과 파트타임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용역의 성행으로 노동자들이 이중취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의 비정상적, 편법적 운영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3) 노동통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국내 노동자들의 의식과 노동운동은 비약적 발전을 보여왔다. 따라서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억누르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노동자들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자본가들은 여러가지 다른 방식들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도 이에 한몫 더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을 깨뜨리기 위해 고용한 곳은 아직 그리 눈에 띄지 않지만,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일례로, 부산의 삼화에서는 투쟁이 진행되

※

이하에서 나오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통계는 4개 단체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수도권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은 노동자간의 경쟁을 이용해 보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자본가의 이윤추구욕에서 나온 것.
 소위 '인력난'을 내세워 연수 등의 이름을 걸고, 실은 불법취업을 정책으로 삼아
 외국인노동자들과 국내노동자들을 한층 더 위협하고 있다.

던 상황에서 기존인원의 감원과 동시에 외국인을 고용해 노동자들의 단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으며, 인천의 P산업에서는 올해 초 시무식에서 사장이 "올해는 임금을 일정하게 올려주겠다. 그러나 내년에 또 올려달라고 하면 인천의 경우처럼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을 위협하기도 했다.

외국인노동자와 국내노동자를 국적에 따라 분리시키고 저임금 등으로 서로 경쟁시키며,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하는 것을 막으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본의 논리이다. 이는 최근 횡행하고 있는 정규노동자의 임시직화, 소사장제도의 도입 등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이익 외에도 이 경제적인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고용형태의 불안정화, 노동자의 분리 착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성행하고 있는 불법고용의 형태로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는 심리적 피해감을 강하게 주고 이를 빌미로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상승의 움직임이나 국내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의 합류 등을 강하게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은 총체적인 노동통제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3. 우리의 대응

지금까지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은 노동자간의 경쟁을 이용해 보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자본가의 이윤추구욕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국내노동자들의 고용문제와 그 뿌리를 같이하는 것임을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인력난'을 내세워 연수 등의 이름을 걸고, 실은 불법취업을 정책으로 삼아 외국인노동자들과 국내노동자들을 한층 더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 국내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요구

(1) 현재 재벌위주의 특혜, 자금지원 등을 즉각 중지하고, 소위 '사양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지원해야 한다.

(2) 택아소 설치 등 노동자들의 평생, 안정적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인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직업훈련, 해고규제, 고용보험제 등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대한 요구

(1) 정책으로서의 외국인불법고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현재 불법으로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한시적인 취업 비자를 발급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에 있어 국내노동자들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3) 노동운동의 조직적 과제

(1)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고용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 경영의 문제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확실히 쟁취해야 한다.

(2) 불완전하게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임시직, 파트타임, 용역노동자 등)을 노동조합으로 전면 조직하여 이러한 불완전고용을 일소해나가야 한다.

(3) 노동자들의 평생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해고의 엄격 규제, 정년의 연장, 택아소의 설치 확대 등)를 확실히 쟁취해야 한다.

(4) 외국인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여 동일한 대우를 통한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기에 한다.

성폭력특별법안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하여

박계현/한국여성단체연합 간사



1. 문제제기

성폭력범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낯선 용어가 아니다. 오히려 이 용어는 우리 일상사 깊숙한 데서 무언가 울분과 한뼘의 고통을 대변하는 보통명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되돌아 보건대 89년 성폭력 가해자의 허를 깨물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변월순사건부터 86년의 부천시의 성고문사건인 권인숙사건, 91년의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었다"고 절규한 김부남사건, 92년 청순하고 가녀린 여대생의 외모 뒤에 십여년 이상 은폐되어 왔던 충격적인 근친강간범죄인 김보은·김진관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들 일련의 성폭력범죄가 사회적 범죄로 대두하기까지에는 자살 내지 살인으로 이어지는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해결, 장기간의 세월 속에 은폐되었던 수많은 성폭력범죄의 축적(?)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생후 4개월된 아기에서부터 70세이

상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그 어느누구도 성폭력 범죄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심각한 우려를 사회전반적으로 확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사회적 확산과는 반대로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정조이데올로기는 성폭력피해자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개인적 해결의 차원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러한 음울한 사실은 오늘날 성폭력범죄의 실상과 그 사회적 규범

의 이중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하겠다.

음성물, 카페, 요정, 안마시술소, 사우나, 피트니스, 터키탕, 리브호텔 등의 향락산업은 오늘날 전국 45만 개이상이나 되며 이들 향락업소의 연간 매출액이 연 4조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전반의 풍토가 성의 상품화와 성폭력범죄의 온상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양상은 부녀자 인신매매, 강도강간, 어린이 성폭행, 근친강간, 아내에 대한 강간내지 성적 학대와 직결된 아내구타, 직장내 성적 희롱, 강제된 매매춘의 양상으로 날로 다양화되고 흉폭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가 개인적 차원의 도덕성 상실과 순결의 상실이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어야만 하고,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결코 개인의 고통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이점에서 그동안 여성운동계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으로서 법과 제도적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고,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표현으로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촉구해 왔던 것이다.

2. 각 법안의 주체와 내용들

현재 성폭력특별법안을 내놓은 주체는 민자당이 '성폭력예방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12개의 성폭력대책활동 관련 민간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이하 여연 성폭력

성폭력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가 개인적 차원의 도덕성 상실과
순결의 상실이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어야만 하고,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결코 개인의
고통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특위)가 '성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에서는 '성폭력 행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작성, 발표하였다.

이들 세 법안의 주요 골격은 성폭력의 예방, 피해자보호, 가해자 처벌 등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안의 주체에 따라서 그 법안의 특성과 방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법안들을 서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간 정부의 성폭력정책의 사각지대에서 10년간 성폭력대책활동을 벌여왔던 현장의 경험들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1년간의 작업끝에 만들어진 여연 성폭력특위의 법안을 비교준거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여연 성폭력특위의 '성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안' 주요 입법방향은

(1) 성폭력의 새로운 법적 개념 규정을 "성적자기 결정침해의 죄"로 규정

(2) 성폭력의 연속선상에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법령을 본 특별법안에 통합, 일원화시키고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행위별, 대상별 주체에 따라서 세분화

①행위에 따라서: 성적자기결정침해죄, 강간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 강도강간, 인신매매, 강요된 매매

춘, 공연음란, 성협오 행위로서 도화, 음란물 등의 제·판매·공연·전시·방송과 전화·통신매체·컴퓨터·우편물 등 유선·무선의 통신수단내지 직접 대화를 통한 음란한 말, 화면, 기타 행위,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접촉하거나 치부노출 등의 행위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②대상에 따라서: 직장 및 시설내 등의 성폭력,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 15세미만의 자 등에 대한 간음, 신체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상시 성적 관계에 있는 강간(아내 강간)

③주체에 따라서: 행벌의 강화 및 다양화, 성폭력범죄의 행위자에 따라 가중처벌조항 또는 보안처분내지 교정처분의 병과, 불이익취급조항, 해방감경조항, 공무원의 처벌

(3) 성폭력의 범죄구성요건을 넓혀 '성적자기결정침해의 죄'조항 신설

(4) 고소기간폐지, 친고죄폐지, 일부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5) 성폭력대책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 및 성폭력대책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보장

(6) 성폭력특별위원회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성폭력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7)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폭력가해자 교화시설 설치

(8) 성폭력범죄의 관할을 가정법원 산하에 두고 조사관제도를 도입하여 활용, 재정신청제도 도입

(9) 수사재판과정과 병원치료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제도 도입

2) 민자당의 '성폭력예방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기타 여러 법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 추가 조항 : 중강제추행, 직장에서 감독 또는 보호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여성을 추행한 자도 처벌함, 버스, 지하철, 극장 등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에게 추행하거나 음란전화, 우편물, 성기노출 행위에 대하여 처벌

(4) 고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적제존속에 대하여도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고소할 수 있도록 함

(5) 성폭력범죄의 소송진행에 관하여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3) 민주당의 '성폭력행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1) 흉포화, 지능화된 성폭력범죄와 신종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와 신설, 확대 : 특수강간, 특수 강제추

행에 야간에 주거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범한 강간, 가족 또는 다수인의 면전에서 범행한 강간,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전자가 승객에 대하여 범한 강간 등, 간음·추행·취업 등을 위한 학위·유인 또는 이를 위한 강간 등의 가중처벌과 석방경감제도의 도입, 성폭력단체죄 신설, 중강제추행죄 신설, 직장여성 등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 신설, 성적해악고지죄, 성적모욕죄, 버스·지하철 등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음란전화, 미성년자 대상 음화제조·판매 등

(2) 친고죄 규정의 폐지, 고소기간 폐지, 일부조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여성의 정조 유린여부"만을 중요시하게 되어 여성을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닌 인간으로 보지 않고 "지켜야 할 정조"만을 지닌 대상으로 본다.

(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 중죄와 빈발범죄에 대하여 보호감호 청구, 필요적 보호관찰제도

(4)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조치 : 피해자대리인제도, 피해자의 비공개조사 및 비공개재판청구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 수사공무원의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공개 또는 누설의 금지와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언론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

(5)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인의 재정신청권 인정

(6)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배상제도 도입

(7) 국무총리실 산하에 성폭력특별위원회의 설치

(8)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3. 각 법안을 둘러싼 쟁점들

1) 성폭력의 법적 개념규정과 관련하여

민자당 안에는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의 장으로 남아 있으며 민주당 안에서는 성폭력의 용어 정의에는 「성적자기 결정침해」문장이 들어가 있으나 죄와 형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며 성폭력특위에서는 「성적자기 결정침해의 죄」로 명문화해 성폭력범죄를 「인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특히 여성계가 폐지할 것을 주장해 온 「정조에 관한 죄」가 민자당 안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여성의 정조 유린여부」만을 중요시하게 되어 여성을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닌 인간으로 보지 않고 「지켜야 할 정조」만을 지닌 대상으로 본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정조 이데올로기의 악순환은 우리 사회에 이중적 성규범을 그대로 순차 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자살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치닫게 함으로써 성폭력을 개인적 불행의 차원으로 다루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옷차림이 단정치 않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혹은 직업이나 과거경력에 있어서 「깨끗하지 않음」이 인정되는 여성이 강간

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정조”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인간의 성에 대한 폭력의 행사이며 인권에 대한 침해로 보아야 한다.

2 성폭력의 범주 설정범위의 문제

(1) 민자당 안에서는 성폭력을 유발시키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내지 제재조치를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법안의 내용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빠져 있다. 즉 성폭력을 유발시키는 음행매개(즉 인식매개나 강요된 매춘행위)와 음란물 제조, 판매 등 성폭력을 유발하거나 성폭력을 조장하는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 법안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에 반해 여연 성폭력특위와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조항들을 법적 제재 속에 규정시켜 놓고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관련하여 민자당 안에서는 구강 성교, 항문 성교 등을 중강제추행죄로 신설 규정한 것과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직장 내에서의 성폭력 등을 새롭게 신설하고 있다. 이 점은 세 법안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신체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다양한 성희롱 행위, 부부사이의 강간이 민자당 안에서는 빠져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신체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성폭력단체조직 죄, 성적 해악고지의 죄, 가족 앞 강간과 교통수단의 운전기사나 승객에게 행한 성폭력범죄까지 제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부사이의 강간과 성적자기결정 침해의 죄(일명 비동의 간음죄)의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

여연 성폭력특위의 안에서는 “성적 해악고지의 죄”, “성폭력단체조직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만으로는 부족하며, 전 사회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죄”의 조항 등이 누락되어 있다.

성폭력의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는 날로 성폭력범죄가 대상과 주체와 행위에 따라 총폭화, 다양화되어가고 있고 특히 통신매체와 비디오, 도화, 음란물 등의 광고를 통한 성폭력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음을 볼 때, 성폭력범죄의 범주 속에 이러한 유형들을 보다 세분화하고 그 제재폭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양성 모두에게 해당되어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자당 안의 여성에 한정된 목적 규정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연에서 제기된 범죄의 범주설정과 민주당 안에서 새롭게 제기된 범죄의 유형을 서로 추가,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다.

3) 친고죄 폐지여부에 관한 문제
친고죄의 폐지 여부는 가장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민자당 안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시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을 뿐 특별가중처벌범죄에 해당하는 것만 빼고 중강제추행, 강간, 강제추행, 직장관계에 의한 추행,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 등에는 친고죄 규정이 남아 있다.

이에 반해 여연 성폭력특위와 민주당

당안은 친고죄를 폐지하고 대신 「반의사불벌죄」를 신설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의 기본적인 시각과 직결되어 있다. 즉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만으로는 부족하며, 전 사회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본다면 친고죄 때문에 오히려 그간의 성폭력피해 사실이 더욱 은폐되어 왔고, 강간범들이 이를 역이용하여 강간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또한 어린아이가 피해자인 경우 판단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부모가 미처 모르고 지나갔다가 피해어린이가 사춘기를 맞으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해여성이 장애인인 경우나 시설내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피해당사자의 의사결정능력의 부족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더욱 은폐되고 조장되기 쉽다. 더욱이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나 성적 희롱을 당했을 경우, 그 어느 누구라도 신고만으로 처벌이 가능

도록 되어야지 이것을 천고죄로 규정해 두는 것은 성폭력범죄대책에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차원의 공공예방을 오히려 저지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천고죄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4) 성폭력대책활동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 민간단체와의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은 민자당 안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되어 있다. 현재 민자당 안

모지에서 10년 가까이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일해 온 기존의 성폭력관련 민간단체의 대책활동이 위축되거나 말살될 위험성이 많다.

현재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피해자구조 시설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민간단체를 지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성폭력대책사업을 관 주도로 통제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비현실적인 독소조항이다.

특히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는 성폭력에 대한 정부정책의 사

자율적인 민간단체의 성폭력대책활동을 등록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적인 차원에서 민간대책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등록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5)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시설, 가해자 교화시설의 문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성폭력범죄들이 검찰의 처리단계에서 기소유예가 3.2%, 무혐의처분이 10.0%, 기소중지가 22.1%에 이르고 있다.

여연 성폭력특위 안은 민간단체차원에서의 자율적인 성폭력대책활동은 국가가 육성하되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는 등록요건을 갖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에서는 제4조 성폭력피해보호 설치 조항과 제9조(허가의 취소조항),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38조 2항(과태료조항)이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다. 이들 조항에 의한다면 법인만이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바로 이 조항은 관련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보다는 제약하고 규제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설치의 자격이 없는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난무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것을 알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성폭력대책활동의 불

각지에서 민간단체가 '쉼터'라든지 '성폭력위기센터'라든지 하는 시설의 명칭으로 피해자 구조기관을 운영해 오고 있는 바, 국가가 이런 독소조항을 넣고자 한다면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지적 소유권에 대한 침해조항으로 국가를 제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민자당 안에 비해 여연 성폭력특위 안은 민간단체차원에서의 자율적인 성폭력대책활동은 국가가 육성하되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는 등록요건을 갖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민주당 안에서는

또한 법원의 처리과정에서 대략 2/3 정도가 무죄로 되거나 비실형의 판결에 따라 교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같은 점 때문에 성폭력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검찰 및 법원의 처리단계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법적 통제로 작용되지 못해, 성폭력피해 사실을 개인적 불행의 차원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법적으로 담겨져야 하는 바 민자당 안의 「피해자의 증거 능력에 대한 특례」는 발전적인 조항이나

그외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미 전제로 되어있는 점만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재판의 비공개) 언급하고 있어, 경·검찰 및 법원의 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너무나 미흡하다.

이에 반해 여연 성폭력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런 전제된 조건을 기초로 재판전 조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피해자의 동행자 지정, 가정법원판할 조사판제도 도입과 활용, 재정신청, 배상판결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해자의 교정처분시설을 통해 가해자가 교육받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각 당 안에서도 법적으로 조문화하여야 한다.

4. 결론 :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앞서서 크게 비교되고 쟁점이 되는 사항들만 정리하여 보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도 여러가지 상이한 점과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대책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율적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 지원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⑤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피해자보호시설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소중지 또는 무혐의처분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배상판결, 피해자의 동행자(대리인)제도 신설, 가정법원 관할의 조사판제도 도입과 활용, 피해자의 진술이 도입되고 피해자 보호시설들의 확산이 국가예산으로 충당되면서 민간차원의 피해보호시설을

법안의 제정으로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할 국민인 여성이 이 법안의 성립과정과 의견수렴과정에서 빠지게 된다면 "특별법"은 하나의 그림의 떡이 되기 쉽다. 이런 점에서 입법청문회를 통하여 국민적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민주당 안에서는 성폭력관할이 기존의 형사관계를 다루는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한 점과 조사관 활용이 없다는 점이 다르며 그외는 여연 안과 비슷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호절차제도는 다양한 많은 제도를 서로 보완해야 되리라 본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에 세 안이 모두 거론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민주당안은 상당히 명성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민주당이나 민자당 안에는 가해자 교화시설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 이점에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

법안의 쟁점들을 어떻게 합의시켜 내는가가 바로 이 성폭력특별법안의 올바른 방향과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① 성폭력의 법적 개념은 「성적자기 결정침해의 죄」로 되어야 한다.

② 성폭력의 범죄 범주는 행위별, 주체별, 대상별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그 포괄범주를 넓힐 것과 범죄의 구성요건 역시 피해자가 말이나 의사표현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나 자유의사에 의해 동의하지 않은 모든 강제적 성을 기준으로 해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넓혀야 한다.

③ 친고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영을 지원할 책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 등이 피해자의 보호조치로써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 교화 시설도 가해자의 다양한 처벌유형의 하나로 성폭력의 재범을 막는 교화시설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법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매우 어렵고 딱딱한 것으로 보이기 쉽다. 더욱이 이 법안의 제정으로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할 국민인 여성이 이 법안의 성립과정과 의견수렴과정에서 빠지게 된다면 "특별법"은 하나의 그림의 떡이 되기 쉽다. 이런 점에서 입법청문회를 통하여 국민적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의 성과와 전망

이미경/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



1. 머리말

1992년 9월 1일~6일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평양토론회가 여성들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관심 속에서 열렸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단순히 남북일 여성 지도자들간의 국제 회의 또는 토론회 차원으로 한정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 여성들이 광양에서 만나는 행사이며, 민간 교류로서는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루어진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남북단일 축구팀과 통일음악제 등 스포츠와 음악을 통해서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과시한 민간교류가 있었지만, 이것은 남북 정부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했는데 비해, 여성들의 이 토론회는 남한의 진보적 여성운동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민족대단결, 일본의 전후보상과 책임, 아세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 등과 같은 남북간 대화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교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토론회가 진보적 여성운동 지도자들이 주체가 되어 토론회를 성사시키고 참가했다고 하지만, 그것의 준비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여성운동 안에서 조직적으로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지난번 서울토론회 이후에도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며, 앞으로의 전망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평양토론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더불어 평가를 곁들이고자 한다. 단 아직까지 토론회에 참가한 실행위원들과 남측 참가자들간의 공식적인 평가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평가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

2. 토론회의 주체와 참가자 선정

평양토론회를 준비하는 남쪽의 주체는 지난 서울토론회의 공동대표인 이우정, 이효재, 윤정옥 3인의 공동대표와 더불어 강성해, 김윤옥, 안상남, 윤영애, 이미경, 한명숙 등 6인의 집행위원이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한국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였다. 혹시 평양토론회를 앞두고 한국실행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물음을 던질 수 있겠지만, 재구성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것이라 판단되었다. 사실 서울토론회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평양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일종의 기득권을 주는 것이어서 그 의견을 수렴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서울토론회의 주체였던 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대신 각계 각종 여성들이 평양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4월 말 동경에서의 비공식 접촉에서 북측에게 기자를 포함하여 30명으로 인원수를 확대해줄 것 (서울토론회는 15명의 북측 대표를 초청하였다)을 요청하였다.

다행히 북측이 7월 29일 판문점 예비실무회의에서 대표와 실행위원 9인

을 지명초청하고, 기자 5명을 포함하여 30명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인원수의 확정이 이루어졌다. 16명이 더 참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준비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정부와 끝까지 신경전을 벌인 것이, 늘어난 여의참가인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였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통신, 행낭전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요원이 필요한 것이었고, 정부는 최소 5인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양보하고, 대신 11명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선정한 각계 각종 여성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정부에 참가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11명은 여성계 원로, 노동, 농민, 학계, 예술계등 각계 각종의 여성 지도자들로 고루 배치하였다.

명단을 제출해놓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정부에서는 재야 여성단체 중심으로 보낼 것인가 왈가왈부 논의가 많은 모양이었다. 정부 쪽에서는 우리에게 "범여성적으로 대표를 구성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참가자의 반은 재야 여성이 아닌 쪽에서 구성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물론 우리 쪽에서는 이것은 자율적인 민간교류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부는 민간교류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처럼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하였다. 판문점을 넘어 북녘 땅으로 가는 일 자체가 정부의 협조없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소지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작년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북측 목회자를 총회에 초청한 건이 도착 하루 전날 무산된 것처럼, 정부는 우리의 민간교류를 언제든지 합법의 틀 속에서 방해할 수 있는

방편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무리한 개입을 규탄하고 평양토론회 참가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을 통해 타협을 이루어 낼 것인가? 타협의 지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는 고민과 과제가 실행위원회에 넘겨졌다. 정부의 개입은 통일원만의 의사가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의 다기한 의견의 반영이며, 더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여성계에서의 압력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대표단 구성을 놓고 정부와 타협을 하지 않고 토론회 참가를 거부할 경우, 국민 여론은 반반이라고 생각되었다. 정부도 비난을 받겠지만, 국민 여론 역시 우리가 조금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신경전 끝에 북측에 참가자를 알려주어야 하는 마지막 시점에서 타협안으로 합의본 것이, 대표단은 우리 쪽 3인으로 하여 대표성에서의 주도성을 명확히 하며(북측이 대표단을 5인으로 하였고 때문에 정부는 대표단 역시 범여성적으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쪽 이외의 추가 인원은 통일문제 전문연구자 7인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노동자, 농민 등 기층여성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조화순목사가 참가하기로 되었지만, 실제 노동자·농민대표가 빠지게 되었고, 그동안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교회여성연합회의 박순금 회장이 빠지게 된 것이 가장 마음 아픈일이며, 대표단 구성에서 미흡함을 던져주는 문제였다.

이상에서 살펴 보듯이 남북여성간의 역사적인 만남의 성격이 강한 이 토론회의 주체를 둘러싸고, 여연과 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여성운동계 내에서는 물론이지만, 중

간직, 보수적 여성운동계와 각계 각종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토론회가 성사된 직접적인 배경은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이 우정대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측과의 교섭의 산물이지만, 이 토론회가 가지는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보다 확대된 조직 구성이 요청되는 것이었다.

3. 토론회의 목표와 성과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마 남·북·일 여성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먼저 남측 여성들은 통일독일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과연 통일이 여성문제의 자동적 해결을 가져올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성들은 통일을 위한 전체 운동의 흐름에 연대하면서도, 통일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과 평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되, 이와 더불어 여성문제를 중요한 고려로 삼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한반도 여성들이 겪는 고통의 주된 본질이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민족분단에 있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독자적인 의제로 삼을 필요가 없으며 민족대단결, 통일방안, 외세의 문제 등에 대해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공동 모색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여성생활이나 지위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 생각하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번 평

이 토론회가 전체 통일운동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여성문제를 포함해 내도록 해야하며 나아가서 통일운동에서 여성의 독자적 역할과 공헌을 부각시켜내도록 노력할 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여성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얻어낼 수 있다.

양토론회에서도 북측의 한 질문자는 “집안에 강도가 침입한 절박한 시점에 서, 강도가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지는 것은 너무 한가로운 태도가 아닌가”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남측의 여성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민족민주운동의 전체적 관점과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미 많은 토론이 있었으며, 그것은 결코 분리되거나 병렬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전체 통일운동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여성문제를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토론회가 전체 통일운동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여성문제를 포함해 내도록 해야하며 나아가서 통일운동에서 여성의 독자적 역할과 공헌을 부각시켜내도록 노력할 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여성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여성에 비해 일본측의 입장은 다소 제 3자적일 수밖에 없다. 즉 남북 여성간의 만남에 있어서 매개자, 중개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가끔 “북측과의 연락을 제 3국을 통해서 하라”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는 동안은 이러한 일본의 역할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중개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토론회에 참가하는 일본의 입장은 “아세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일본의 새로운 군사대국화와 경제적 지배를 막는 일이 필요하므로 남·북·일 여성들이 함께 공동 노력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입장은 남북 양자에게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향후 이 토론회가 남·북·일 여성만이 아니라 ‘아세아 여성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했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목표의 강조점에서 각기 차이점을 가지고 만난 남·북·일 여성간의 토론회가 3차례 걸쳐서 진행되는 동안, 공동인식과 이해의 폭이 상당히 넓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작년 1991년 5월 처음 동경에서 남·북·일 여성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만 하여도, 우리들은 만약 서울 토론회, 평양토론회가 열릴 때, 무슨 의제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 분명하지 못했다. 우리는 북측의 여성대표들을 잘 알지 못하였고, 북측 대표들 역시 남측의 진보적 여성운동가들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경 만남을 통해, 우선 서로간에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서울토론회와 동경토론회를 약속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아주 성공적인 상견례였다고 생각한다.

이후 1991년 11월 서울토론회 때는 남북여성들이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러나 서로 다른 체제에서 46년간 살아온 남북 여성간의 관심과 인식의 차이점 때문에 매우 격렬하게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

남측 여성들은 '여성과 문화'라는 주제를 채택하여 통일의 핵심문제에 바로 접근하기 보다는 여성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만나기를 원했고, 북측 여성들은 '통일과 여성'의 주제를 가지고 바로 통일의 핵심에 다가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음을 내어서 맛있는 하모니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남측 여성들에게는 "우리가 생활적인 관심은 높지만, 민족의 핵심적인 문제인 통일방안 등에 대해서는 주변부에 스스로를 위치지었다"는 반성을 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북측 여성들은 남측 여성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후 1992년 9월 우리는 평양에서 세번째의 만남을 가졌다. 주최자인 북측 여성들은 여전히 통일의 핵심 주제

가 될 수 있는 '민족 대단결과 여성의 역할'을 주요 의제로 내왔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통일방안을 의제로 하는 것 보다는 남북 여성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폭 넓은 의제였다. 북측 여성들은 남북 여성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발언은 가능한한 자제하고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즉 현재 남북 당국자간의 첨예한 문제로 부상되어 있는 핵사찰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일본의 핵개발에 공동 경계하자는 제안 등은, 분명히 핵문제가 거론될 것을 예상하고 남측에서 준비해간 내용과 우연히 일치되는 것이었다.

특히 일본의 전후책임과 정신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상문제는 남·북·일 여성이 공통관심사로 주목을 받았다. 정신대 문제는 남측과 일본측이 동경과 서울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북측의 관심을 촉구하였는데 이 덕분인지 그동안 북측은 많은

증언자를 찾아내었고,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대표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만남을 거듭하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동의 실천과제에 접근하게 된 것이다. 제 4차 토론회의 의제를 자연스럽게 '정신대 문제와 일본의 전후 처리'로 정하고, 1993년도에 동경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일 여성들은 3차례에 걸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아세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남·북·일 여성들의 공동인식과 기반을 넓혀내는데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이 토론회를 상설화하기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일을 위하여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회'라는 상설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불과 1년 동안 3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신대 문제를 공동 대처하게 되었고, 이것은 아마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남북일 또는 남북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체적인 과제를 찾아낼 수 있는 전망을 던져주었다고 생각한다.

4. 전반적인 평가와 전망

범민족대회나 범민련 활동이 당국에 의해 불허되고 그 관계자들이 구속, 수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들의 토론회가 성사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성 토론회를 통해서 당국이 노리는 이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민간 교류운동은 원칙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운동의 범위 내에서 투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말

앞으로 상설화 할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회'를 지금보다는 더 진보적 여성운동의 조직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 당국과 끊임없이 신경전을 벌이고, 타협하고, 그리고 일정하게 협조를 받고 진행되었던 여성토론회는 전혀 무쟁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아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조직이 그러한 타협을 허용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며 결과적으로 토론회는 성사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토론회를 위해서 남북간의 접촉, 신변안전문제 등에서 이미 정부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구조적으로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대한으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일하고자 한 반면에, 정부로서는 남북여성간의 토론회가 향후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협조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투쟁의 방식만을 가지고는 현 단계로서는 평행선을 그을 뿐 성사

되기 힘들며, 타협의 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자주적 민간교류에서 가장 힘든 점이었다. 어떤 때는 "차라리 그만 두어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고, 이때 정부나 우리쪽 모두 대 국민적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가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설정되었다. 여하튼 시시각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대 정부와의 문제들을 조직적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시시콜콜 털어 놓고 의논하기란 현 단계에서는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판문점을 넘어서기까지는 이 일이 성사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었을 정도이었으니까.

비록 여성단체들간에 조직적으로 합의하여 구성된 실행위원회나 대표는 아니라하더라도, 우리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활동이 통일운동 뿐만 아니라 진보적 여성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행동하였다. 우리의 발제 내용이나 발언들이 그동안 함께 여성운동, 통일운동, 평



화운동을 해온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의 견해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지? 혹시 우리의 발언을 '북의 일방적 견해를 지지한 것'으로 왜곡 보도되지는 않을 것인지? 정부 추천 인사들의 발언이 남측 주최측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북측에 오해되는 일은 없을 것인지? 등등 모든 것들이 노심초사였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덮여지듯이" 다행히 평양토론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마지막 일정에도 없던 김일성주석의 초대는 평양토론회의 지위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 토론회의 결과에 대해, "재야 여성운동 지도자들이 중심되는 민간교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토론회에 대해 북측도 "성공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후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남

측 정부가 이익이 있으니까 교류를 허용한 것 아니냐? 결국 정부 측의 이익을 위해 기여한 것 아니냐?"는 일부에서의 물음은, "북측에서 김 주석까지 남측 여성대표를 초청한 것은 자신들에게 그만큼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정반대의 물음과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처럼 극단적인 의심 속에서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평가의 잣대는 남측 정부가 이익을 보았느냐, 북측 정부가 이익을 보았느냐 보다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도움이 되었느냐에 두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토론회가 가지는 중요한 성과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역량을 전국적 그리고 범민족적으로 과시하였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준비과정이나 대표선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지는 못했지만, 이 토론회는 분명히 그동안 여성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수행해온 진보

적 여성운동의 성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상설화할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회'를 지금보다는 더 진보적 여성운동의 조직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여성단체연합 대표와 여성 노동자나 여성 농민운동 대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이들 대표를 파견한 집단에서는 보다 성실하게 이 토론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운동은 가능한한 각계 각층이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참가의 범위에서 우리와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여성 지도자들의 참여도 포용하려는 개방적 자세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측 내에서의 여성간의 대화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의 대표 이영순회장을 찾아서

약력

- 1948년 2월 10일 출생
- 1973년 콘트롤데이타 노조결성시 노조부지부장
콘트롤데이타 노조 2대 지부장 역임
- 1982년 콘트롤데이타 노조 3대 지부장당선시 해고
- 1984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부위원장 역임
- 1987년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회장 역임
- 1989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
-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공동대표 역임
- 1988년-1990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역임
- 1992년 7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올해 7월 11일 결성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의 이영순대표를 만나 보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전국 6개의 여성노동자회(서울, 인천, 부천, 부산, 광주, 마산 창원)가 여성노동자운동의 지역간 통일성을 더욱 높이고 공동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하였다. <편집자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의 초대 대표가 되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회협의회를 결성한 것은 우리 여성노동운동에 있어서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운동이 탄압으로 조직역량이 감소하고 특히 여성노동자의 조직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어려운 상태에서 협의회의 일을 맡게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노조결성 때부터 지금까지 조직을 만들고 주요책임을 맡아온 것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와서 마음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자보다는 밑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 희망인데 언제나 책임자로 있다보니 더 잘 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여성노동자운동을 함께 끌어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 20년을 여성노동자운동에 몸담아 오신 분이로서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부분이 낙후되어 있는 계층이 여성인데 노동운동에서도 여성노동자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그간 전여성의 해방을 위해 여성노동자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6, 70년대 가족을 위해 노동현장에 제일 먼저 나와서 갖은 고생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노동자의식이나 권리의식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노조활동을 할 때 여성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불평등하고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운동을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을 하게 되면서 노동운동쪽에서

활동하고 나이도 많은 내가 선두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87년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결성된 이후 5년간 전국 7개 지역으로 운동이 확산되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구심점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 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의지의 표현이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의 결성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87년 한국여성노동자회를 결성하고 이어서 89년에 인천여성노동자회가 결성되면서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부천·부산·성남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임금해소와 모성보호, 고용안정과 탁아법제정 등의 정책개발과 선전활동, 또 회지 『일하는 여성』 공동제작과 공동교육, 수련회 등, 공동활동을 3년간 하면서 쌓여진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전국조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의 과제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적인 과제로는 '평생평등노동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당면 과제로는 탁아와 모성보호, 고용안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불안정인데 89년 이후 자본이전, 산업구조조정, 위장폐업 등으로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이 감소하고 임시직, 파트타임, 용역 등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권익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함으로써 조직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올해에 '여성노동정책과 근로기준법 여성관계조항 개정' 등 법·제도투쟁을 통해 용역 반대, 임시직·가내하청노동에 대한 규제와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직장단위의 조직뿐 아니라,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미혼·기혼여성의 특성과 작업형태에 따라 다양한 조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성노동자회의 발족으로 가장 고통당하고 제 몫을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여타 타 계층의 여성들의 힘이 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3·8세계 여성의 날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계 문제를 주장하고 전 여성의 문제를 각인하고자 노력하였고, 노동조합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여성노동자운동이 더욱 발전되어 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과 다양한 일상활동의 전개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사업장이 폐업되고 조직이 파괴됨으로 인해, 전 여성의 공통과제 해결에 앞장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운동의 대열에 집결, 정치세력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성해방의식과 생산현장, 주거현장의 실천을 중심으로 실천과제를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면서 각계각층의 여성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의 결성을 계기로 하여 힘차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를 찾아서

한 국여성의전화는 1983년 6월 10일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여성억압의 현실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폭력을 종식시키며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민주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여성의전화 기본사업은 남편의 아내구타, 외도, 부부갈등, 시집갈등 등 가정내 문제에서부터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제반 성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83년 개원 이래 현재(92년 5월 30일)까지 30,900건의 상담을 받았고 이중 구타 상담은 32%를 차지하고 요즘 한달 평균 상담건수는 500여건에 이른다.

또한 87년부터 구타당한 여성과 강간당한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서 피신해 있을 수 있는 긴급피난처 '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쉼터에서는 집단상담, 인간관계훈련, 독서토론, 영화감상, 주제토론 등을 통해 이들의 심신을 달래고 주체적 여성으로 살아가도록 상담과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고, 쉼터를 이용한 여성들은 '배틀여성'모임으로 조직해 오고 있다.

매년 2회(현재 18기 교육진행) 실시하는 여성상담교육은 여성의전화의 자원상담원 배출은 물론 적용을 위한 기존상담과 달리 자신의 삶을 개척, 변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상담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리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86년부터 해마다 제작, 판매해 온 여성수첩은 여성문제의 기초적인 인식을 수첩의 특성에 맞게 편집하여 여성단체는 물론 일반주부, 생산·사무직 여성노동자, 대학생 등 단체와 개인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성의전화 소식지로는 '배틀'이 매월 1회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중에서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의전화 상담은 여성들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하나의 틀로 묶어내고자 한다는데 있다. 이는 여성의전화 상담이 결코 일부 여성들만이 당하는 특수한 사례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차별적 구조와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와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전화는 상담을 매개로 여성대중을 조직하고 이들의 의식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한다. 그래서 여성의 전화에서는 상담후 법적 대응을 비롯한 후속관리, 사회여론화 작업 등에 힘을 기울인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권인숙성고문사건을 비롯한 변월순씨 사건, 영생애육원 집단 성폭행 사건, KBS시청료징수원 폭행사건, 남희순씨 사건(아내구타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상담과 이를 통한 성폭행사건 해결을 노력해 오면서 관련법이 피해여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을 절감했고 이에 따라 작년 4월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더욱 많은 단체가 참여하여 여연 산하에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을 만들고 국회에 청원해 놓고 있다.

여성의전화는 내년이면 10주년이 된다. 그동안 고통받는 여성들과 함께 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앞으로 여성의전화는 10여년의 역사와 사업의 축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

여연 활동소식

"14대 여성의 의회진출 평가와 향후 방안" 공개토론회

지난 4월 29일(수)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공동으로 14대 총선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좌절된 원인에 대한 평가와 향후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4대 총선에서 지역에서 모든 여성후보가 낙선하고 전국구에서조차도 미비한 진출로 전체 국회의원의 0.1%도 못 미치는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을 보면서, 그간 연대활동이 없었던 여성단체들이 함께 모여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순서는 주제별 발제로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여성단체활동의 평가와 반성"(김현자: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여성후보의 선거패인 사례발표"(한영애: 민주당 울산구, 임진출: 국민당 경주), "여성의 의회진출의 제도적 문제점과 향후방안"(이춘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이루어내기 위해 여성단체의 연대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들이 제기되었으며, 앞으로 여성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모아진 의미깊은 자리였다.

"하기정책수련회"열린다

지난 8월 7일(금) 오후 2시부터 8일(토) 오후 3시까지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전환기의 한국사회와 여성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2년 하기정책수련회가 열렸다.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많은 수가 참석하지 못했지만 약 60명의 단체대표와 중간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수련회는 첫날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원인과 한국사회운동의 방향에 관한 논쟁점"이라는 제목의 박형준선생의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날 이미경부회장의 "전환기의 한국사회와 한국여성운동의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제가 있었다. 주제발제에 이어 지역운동의 차원에서(손정연: 부산여성회 회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여성노동운동의 차원에서(이경자: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주부운동의 차원에서(김상

희: 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 논평과 질의응답으로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어 오후에는 분반으로 나뉘어 주제발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전체토론에서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변혁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운동의 내용과 외연을 확대, 보충, 풍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통의 인식위에 전여성적인 과제를 공동이 소화하여야 한다는 점들이 제기되었으며, 모든 여연회원이 모여 동지애를 확인하고 연대의 구심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성대회를 몇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과 '민주여성'을 회원단체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제안도 있었다.

이번 수련회는 여성운동의 과제를 더욱 풍부히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주제에 대한 사전 공유와 논의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토론과 일치점을 얻는데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92 여성주간행사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92 여성주간 행사가 여연회원단체의 주관으로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성황리에 열렸다.

여성주간 행사는 그간 한해동안의 여성운동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여성운동을 대중적으로 선전해내고 여성운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확대

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올해에는 중점사업인 '성폭력추방'을 주제로 한 대회로서 우리사회에 만연된 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피해자 보호중심의 '성폭력특별법'제정의 촉구 및 성폭력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여론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아래 전국 8개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여성주간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9일, 20일 제주 제민신문 강당에서 '성폭력없는 여성한마당-우리꽃물을 트자'는 주제로 여성대회가 열려 19일 오후 4시에는 신혜수 여연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 초청강연과 20일 오후 2시, 4시 두차례에 걸쳐 '투구에 걸린 목'이란 제하의 토론, 진관사건을 다룬 연극을 상연했다.

9월 23일 오후3시에는 '성폭력추방과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대회'가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강당에서 여연 성폭력특별위의 주관으로 28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9월 24일, 25일 오후7시에는 강남창원영남체육관에서 강남여성회 성폭력상담소의 주관으로 '성폭력 대비를 위한 호신술 강좌'가 열렸으며 10월 9일에는 오후 6시 30분에 역시 강남여성회와 마창 여성노동자회, 강남대 총여학생회의 주관으로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여성문화한마당'이 열렸다.

9월 26일에는 대구YMCA강당에서 대구여성회의 주관으로 성폭력추방을 위한 '여성대회'가 열렸다. 같은 날 오후3시에는 인천 부평역에서 인천여성노동자회의 주관으로 '올바른 성

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가두서명'운동이 있었다.

10월 2일에서 8일까지 서울 그림마당'민'에서 제6회 '여성과 현실전'여성·성폭력의 그림전시가 민족미술협의회 여성미술연구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성폭력특별위 활동보고

제6차 총회에서 92년도를 "성폭력추방의 해"로 정하고 성폭력대책활동을 벌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이후 성폭력대책활동 방향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정책토론회를 가진 결과 성폭력대책활동 사업의 중심을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에 두기로 결정하고, 성폭력특별법 시안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성폭력특별법 초안을 작성(이종걸 변호사), 전문위원 좌담회 개최 등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 변호인과 특위위원을 중심으로 한 수차례에 걸친 시안마련을 위한 모임과 성폭력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가진 변호인, 관련 여성단체, 사회단체 관련인의 애정 어린 의견에 힘입어 마침내 지난 7월 4일(토) 「성폭력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하고 7월 31일 성폭력특별위의 「성폭력대책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제목의 성폭력특별법안을 이우정의원에 의한 소개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성폭력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는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성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여성을 보호,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 특히 현행 성폭력 관련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성폭력피해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현행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점과 '성폭력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이어,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성폭력종합대책안」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정부부처(법무부, 노동부, 문화부, 보사부, 교육부, 경찰청, 정부제2장관실)에 보냄으로써 법안에 담겨져야 할 구체적인 조항과 정부부처의 성폭력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방침과 세부비침, 국가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예산 확보, 인력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각 정당에도 성폭력특별법 마련을 위한 구제안 및 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바 있다.

이와같은 여연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의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은 정부가 성폭력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어, 민자당이 '성폭력예방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서둘러 발표하는데 이어 민주당에서도 '성폭력 행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도록 하는 성과를 낳았다.

상반기 활동이 성폭력특별법 시안을 마련하고 성폭력범죄 근절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하반기 활동은 정당초청 공개토론회 개최 등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4개 법안(연연, 민자, 민주, 국민)의 주요 쟁점사항과 민자당안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올바른 성폭

력특별법의 내용은 무엇이어서 하는가를 선전하는데 주력하였다.

이후 보다 광범위하게 민간사회단체간의 연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성폭력추방과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의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해 지난 9월 23일(수) 28개 민간사회단체가 연대한 가운데 "성폭력추방과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이르렀고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현재 지난 9월 23일 공동결의대회를 주최한 28개 민간사회단체를 비롯하여 본연합산하 25개 단체가 함께 일반 시민에게 성폭력특별법의 올바른 제정방향을 알리는 전단배포, 국회로 하여금 피해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압력을 가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방향과 내용에 관하여 법제사법위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토의하는 입법청문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성폭력특별법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제정되어야 할 내용을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성폭력추방홍보소책자, 성폭력추방상징물로 호루라기 불편을 제작, 배포하여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발족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지난 9월 26일 오후 3시 장충단공원에서 약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노력을 경

주하기 위해 전국연합과 업종회의, 여연, 민사협, 전민동, 진정추, 반핵연 등과 원로를 중심으로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결성되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국민회의를 결성해나갈 예정이며, 전국적인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온 국민의 열망인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단결을 이뤄나갈 것이다.

여연은 지난 3차 대표자회의때 국민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단, 국민회의가 후보전술을 채택할 시는 탈퇴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지난 10월 13일에는 국민회의 현관식과 사무실 개소식을 오후 3시에 국민회의 사무실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종로구 평동 9-9 경원빌딩 2층 725-2581(110-102).



회원단체소식

기독교여민회

정책협의회 개최

기독교여민회는 지난 6년간 발인 중점 사업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각 지역 지역장과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책협의회는 그간 회원들이 구체적인 활동가로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고, 기독교여성운동 흐름을 회원 스스로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여성안수 주간 행사

백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드문 성장을 이룩했다. 이는 교회내 70%가 넘는 여성신도들과 여전도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그런데 아직도 장자교단을 자칭하고 있는 예장통합에서는 60여년전부터 건의해 온 여성안수를 계속 거부해 왔다. 이에 기독교여민회를 비롯한 기독교여성단체들은 올해부터 여성안수 주간을 선포하고 '한국교회 여성안수를 위한 공동대책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7차 총회를 앞두고 8월 29일에는 선포예배, 8월 29일 선포예배후 걷기대회, 9월 3일 공청회 '여성안수 거부 언제까지?'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군축과 여성복지 교육안' 마련

기독교여민회 선전부에서는 '군축과 여성복지'라는 주제로 대중교육자료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위한 군축의 필요성과 국방비가 줄어들었을 때 그것을 복지예산 특히 여성복지예산으로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노동자들에게는 총액임금 5%인상으로 억제하면서, 민자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5%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15%의 인상은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에서 그만큼을 더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제는 임금인상 요구투쟁 뿐만 아니라,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세금이 바르게 쓰일 경우 우리 생활이 얼마나 윤택해질 수 있는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지침서가 그런 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환경보호바자회와 '새날을 여는 여성예배'

9월 22일 오후 3시에 구로동 회망의 집에서 '기증품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회원과 주변의 기독교여민회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낸 기증품이 성황리에 판매되어 재정자립을 위한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군축과 여성복지'라는 주제로 새날을 여는 여성예배를 드렸다. 김윤옥선생(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기독교여민회 자문위원)의 알찬 강연과 군사문화로 인한 여인들의 아픔을 그린 소리극과 풍물은 자리를 메운 여신도들의 '방위비 축소와 여성복지 확대'를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기에 충분했다.

경남여성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

경남여성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로 지난 4월 29일, 30일 이틀에 걸쳐 '여성,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송회(여성학 강사)를 초청, 강

연회를 개최하였다. 29일 오후에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30일 오전에는 주부를 대상으로 강연이 진행되었는데 400여명이 참가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5월 3일에는 동우리공부방 주관으로 '동우리 하루사랑 나누기'(일일차집)를 열었다.

직장여성교실

여성들에게 주체적이고 보람찬 직장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열린 제 13기 직장여성교실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열렸다. 후속모임으로 '우리 모임'이 꾸려져 현재 활동하고 있다. 9월 23일부터는 제14기 직장여성교실이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내용은 여성 문제가 무엇인가, 여자는 어떻게 키워지나, 법으로 본 여성의 지위,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여성상, 건강한 성의 이해, 주체적 삶과 보람찬 직장생활 등으로 꾸며졌다.

성폭력상담소 개소식

지난 6월 27일 경남여성회 산하 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하였다. 주부모임이 중심이 되어 4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태어난 성폭력상담소는 앞으로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활동과 성폭력추방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7월 14일 '제1기 상담원교육'을 마치고 현재 후속 모임을 하고 있다.

'여성신문' 마산지사 개소식

9월 29일 경남여성회에서는 여성신문 마산지사 개소식을 가졌다. 지역여성들과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해 여성신문 마산지

사라는 새로운 일감을 마련하고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공해추방운동연합 여성위원회

'제1회 녹색상품 전시회'를 열다.

공추련 여성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4일에 여의도 윤중극고 강당에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제1회 녹색상품 전시회'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으로는 쓰레기 과다배출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더욱 진척된 자원의 재활용 운동으로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국민들에게 실천 운동으로서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상품의 생산단계에서 환경을 파괴할 물건이나 포장재질의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많은 생활용품 포장지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경우가 재활용되는 것보다 많기 때문이다. 공추련 여성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하여 해마다 '녹색상품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기업에서 나오는 많은 상품들을 환경 평가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질, 포장용기의 변화를 요구하고 환경을 우선한 상품개발을 촉구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전시된 품목은 총 420점으로 환경사진, 환경도서, 과자의 포장용기와 재질에 있어 파괴화된 것과 플라스틱재질의 상품전시와 알뜰시장 바자회도 함께 열어 동화책, 인형, 문구류 등을 재생휴지와 교환해 주는 코너도 있었다. 이틀간의 행사로

2,000여명 정도의 국민학생과 유치원생들의 환경교육 전학으로 참여하였다.

공추련 여성위원회는 10월의 활동계획으로 10월 16일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로 정하고, 화학조미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실태에 관한 발표회로 행사를 열 예정이다.

광주전남여성회

월례강좌 실시

회원들의 교육공간 마련이라는 취지에 실시하는 월례강좌가 '환경을 지키는 여성'(4월 23일)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6월 18일)라는 주제로 있었다.

김보은·진관 무죄석방과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가두서명

4월 28일 광주전남여성문제특별위원회(광주전남여성회 소속)와 여대협이 함께 '우리의 아들·딸, 보은·진관이에게 광주시민의 사랑을'이라는 성명서 배포와 가두서명을 벌였다. 이 서명작업에 1,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열성을 보였고, 김보은·진관의 무죄석방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5월 여성의 날'제정선포 및 '5월 여성제'

광주민중항쟁 12주기를 맞아 광주전남여성문제특별위원회와 여대협은 5월 23일 오후 2시 광주YWCA회관에서 '5월 여성제'행사를 하였다. 80년 5·18당시 분산적으로 항쟁에 참여하던 여성들이 YWCA회관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항쟁기간중 여성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23일을 '5월 여성의 날'로 제정·선포한 것이다. 강당을 가득 채운 여성들의 뜨거운 의지로 일관된 '5월 여성제'는 식전 길놀이로 시작으로 개회선언, 민주노조, '5월 여성의 날'제정선포, 격려사, 해원굿, 주제강연(성폭력), 결의문 채택, 노래극의 순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치루어졌던 결의대회의 형식을 벗어나 문화행사가 결합된 이날 행사는, 5월항쟁 당시 숨겨진 열사들과 성폭력피해여성들의 넋을 위로한 해원굿에서 절정에 달했다. 뒤이어 일제 정진대부터 최근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여성들이 겪어온 성수난에 관한 주제강연, 최초의 종군위안부 장정임에서 김경숙일사, 최미애(80년 5월 사망한 임산부), 임수경, 박승희, 김보은양의 이야기를 엮은 노래극은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학교내 성추행 근절 대책위원회 꾸리

학교내에서 교사의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자, 광주전남여성문제특별위원회는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고 가해교사의 엄중처벌과 교육계의 풍토개선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7월 10일에는 학부대표, 현직교사, 교육위원, 시의원, 교육청 관계자들을 초청해 학교내 성추행에 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고, 7월 30일에는 대책위 대표들이 시교육청을 방문하여 학교내 상담실운영의 정상화, 교사·학부모·학생에 대한 성교육 강화, 상설연대기구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구례북중 여교사 폭행사건 대책

구례북중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교

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7월 초에 발생하여, 광주전남여성회를 비롯한 이 지역 여성단체들이 이 사건을 사무전문직 여성들의 인권침해의 한 사례라고 판단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일선학교 여교사들이 남교사로부터 폭행당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은데도 대부분 숨겨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7월 6일 사건발생지인 구례북중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날 여성계 대표들은 폭행을 가한 남교사의 징계와 교장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였고, 7월 13일에는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책임추궁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구여성회

대구지역 사무직여성 실태조사 보고회 및 초청강연회

지난 5월 23일 대구 건들바우 박물관에서 사무직여성 실태조사 보고회 및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제조업, 학교, 금융권,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여성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차별실태, 노동조합과 여직원회에 대한 견해, 외식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00부를 배포하고, 그 중 400부를 회수하여 276부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여성회 소모임인 '평등한 노동반'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으며, 사무직여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의 윤정숙노조사업부장을 초청하여 '사무직여성의 힘찬 새날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도 개최하였다.

주체적 삶을 위한 제9기 여성학교 열려

지난 6월 4일부터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학교가 열렸다.

강의내용은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이 하는 환경운동', '여성이 만드는 평화통일', '부엌에서 국회까지' 등이다.

여름수련회 개최

경남 거창군 수송대에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동안 대구여성회 여름수련회가 열렸다.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고 하반기의 더욱 힘찬 전진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어느때보다도 알차고 흥겨운 수련회였다. 공동체놀이 프로그램중에는 각 조별로 주제를 주어 연극하는 춘극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짧은 연습시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전문연극인을 뺄치는 연기를 보였다. 공동체놀이 후에 회원들은 개울가로 달려가 물놀이를 하였는데, 올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수중발레를 연출해 주위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성폭력추방 여성대회'개최

92년 여성주간을 맞아 성폭력추방 여성대회가 9월 26일 대구YMCA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성폭력의 심각성과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에는 성폭력추방 결의대회, 2부는 어린이 성교육강좌, 3부는 직장내 성폭력문제를 다룬 연극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는 250여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여성대회 행사는 대

구여성회의 소모임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를 했는데, 소모임원의 결속과 활동력을 강화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전충남여민회

92년 상반기 신입회원교육 열려

본회는 4월 14일에서 25일에 걸쳐 상반기 신입회원 교육을 열었다. 총 4회를 약 2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첫째 날은 공동체놀이, 둘째날은 여민회 소개, 셋째날은 여성문제 비디오 관람, 넷째날은 여성에 대한 차별실태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신입회원 교육후 3개월간의 신입회원반이 만들어져 운영되었다.

'직장여성' 발행

대전충남여민회에서는 지난 5월 4일과 7월 9일에 격월지 '직장여성'을 발행하였다. '직장여성'은 지역의 일하는 여성들이 흔히 겪고 있는 결혼비지, 부당해고, 승급승진 차별 등 각종 직장내 문제와 고민들을 상담실을 통해 대화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상담사례, 진단, 소식, 여성문화란 등 8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의 금융권, 연구소 등의 노조와 여직원회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대전충남여민회에서는 6월 27일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대전YWCA 4층강당에서 개최했다. 장하진공동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오숙희(생방송여성 진행자)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성폭력의 실태에 대해서는 오숙희씨가,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이영자(성심여대 교수)씨가 성폭력은 현 사회문화적 구조가 낳은 것임을 발표하였다. 뒤를 이어 현행 성폭력관련법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대전충남여성회 여성상담실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변호사가, 성폭력특별법 시안에 대하여는 여연 산하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신혜수 위원장이 발표하였다.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강당을 꽉 메운 300여명의 대전지역 여성과 남성동지들의 적극적 참여는 성폭력 없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참여성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열의와 결의를 나타낸 것이다.

부산여성회

여직원회 간부초청 간담회 열려

여직원소모임반에서는 지난 3월 여직원회장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설문 내용은 여직원회의 현황이었고, 설문 결과 금융권(은행, 보험사, 신용금고), 중소기업 중심 10여 군데 사업장을 선정하여 올 하반기까지 5차례의 간담회를 계획하여 실시중이다.

간담회의 내용은 5월 제1차 '우리 회사 여직원회는 어떻게', 7월 2차 '우리 회사의 올바른 여성상과 남성상', 9월 3차 '직업병과 사무직 여성-VDT증후군', 10월 4차 '결혼피직책제지를 위한 과담회', 11월 5차 '우리가 선 자리-우리가 설 자리'이다.

현재까지 3차 간담회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부산지역 사무직 여성여직원회의 올바른 운영 방안과 여직원회장의 의식고취와 자질함양에 중

요한 계기가 되었다.

수원여성회

하기수련회를 다녀오다.

8월 29일~30일 "여성회, 하나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회원수련회를 다녀왔다. 여성회의 방향성과 88년에서 92년까지 여성회의 발자취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신임회장(황군자)님의 주인이 전제회원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촛불의식을 통하여 여성회 회원들의 하나됨을 확인하였다.

금요여성교실 진행하다.

교육사업인 여성교실은 9월, 10월, 11월 매주 금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다. 성폭력비디오 상영, 직장여성문제,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내용이며, 진행은 회원이 직접함으로써 회원들의 실무력향상과 아울러 사업에 대한 회원의 자발성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로 명칭을 바꾼다

지난 7월 12일 마창,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6개지역여성노동자회가 연합하여 서울여성노동자회 지도위원이며 현 여연 부회장인 이영순선배님을 대표로 하여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를 발족하였다. 이에 앞서 서울여성노동자회는 7월 5일 총회를 열어 기존의 '한국여성노동자회'라는 명칭을 회원들의 결의로 '서울여성노동자회'로 개칭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상반기활동평가도 함께 하여 올 상반기의 주요활동이었

던 회원수련회(4월 18일, 우이동산장)와 지역사업부의 제1기 어머니교실, 교육부·조직부활동에 대한 검토 속에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건축사업이 마무리된 하반기에는 좀 더 폭넓은 활동을 다짐하였다.

총회를 마치면서 전체 회원 여름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지난 8월 15일~16일 원산도에서 회원수련회를 가졌으며, 8월 29일 여성노동자복지회관 개관식행사를 많은 분의 축하와 격려 속에 개최하여 1년여에 걸친 건축사업을 마무리하였다.

하반기에는 대중강좌로 10월 중순경에 1회:성교육(강사·손덕수), 2회:남성심리 분석을 통해 본 남녀관계(강사·지은희)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사업부에서는 제2기 어머니교실을 10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미성교실, 한문교실을 지역부인을 대상으로 열 계획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상반기 간부수련회 및 교육·선전주체 수련회 개최

지난 3월 25일~26일 여성농민운동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전국임원단이 간부로서의 자기인식을 높이며 서로간의 친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 대한 교육과 실습, 공동체놀이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 각 군과 도의 선전·교육사업주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회가 4월 22일~23일, 27일~28일에 각각 있었다. 수련회는 92년 각 도, 군 선전·교육주체들의 실무능력을 높이고 92년 전국여농의 사업목표에 따른 각 지역의 선전, 교육사업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

인가를 논의하고, 각 지역의 고민과 사업을 교류하기 위한 목적하에 진행되었다.

전여농 교양잡지 '여성농민'4호 발행

전국여성농민의 자주적 진출을 위한 교양잡지인 '여성농민'4호가 4월초에 발간되었다. 여성농민4호에는 "92년의 힘찬 활동을 위하여" "우리 농업의 살길은?" "영광여성농민의 발무장사색" 등 여성농민운동에 필요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졌다.

92년 하계 농촌활동 수행

6월에는 92년 여름농촌활동에 대비하여 각 지역 여농조직과 농촌활동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성농민반 자료집'을 발행하였다. 자료집에는 전여농의 통일적인 농활수행지침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각 군, 도 여농조직에서는 본 농활시 마을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강사 개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 농활 기간중에는 180여개 부락 3,600여명의 여성농민들에게 '쌀수입 문제와 민주정부수립'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마을교육이 이루어졌다.

8월, 9월을 통해서는 농활시의 대중적 기반을 조직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각급단위 조직의 수련회 및 후속교육이 전개되었다.

제3기 전국여성농민활동가 교육 실시

지난 7월 24일~26일에는 각 지역에서 여성농민조직활동을 시작하는 초기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교육이 전주 기독교농촌개발원에서

약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교육은 정세와 하반기 활동방향, 여성농민운동의 의의 및 방향과 과제, 각 급 단위조직사례 등을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여성농민활동가 전진대회 개최
9월 23일~24일에 전국 각지에서 여성농민운동을 수행하는 주요 활동가들이 모여서 상반기 활동평가와 하반기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모으는 전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약 50여명이 참여한 활동가 전진대회에서는 쌀전량수매와 여성농민 개혁과제 쟁취 및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해 가기로 결의를 모았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5월 5일 '어린이 날'행사 풍성

예년의 경우 서울·경인지역이 한데 모여 전교조·학부모회 등과 어린이 날 기념잔치를 벌였는데, 올해는 각 지역별·탁아소별로 그 특성에 맞게 어린이 날 행사를 풍성하게 벌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행사로는 전교조초등지회·참교육학부모회 등의 단체와 함께 서울교육대학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벌여, 당일 참가인원이 근 5,000여명에 달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사무실 이전

남영동에 위치하던 사무실을 신도림동 근처인 구로동으로 지난 6월 24일 이전하였다. 이전 주소와 전화는 다음과 같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152-055)
전화: 838-3296~7

전국도시빈민협의회 건설과 지택연내 도시빈민위원회 설치

정부의 도시빈민정책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활동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도시빈민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위해 보다 조직적인 단결의 구심인 '도시빈민협의회'가 건설되었다.

이는 다가오는 정권교체기와 더불어 도시빈민 뿐만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의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시빈민대중의 통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9일 결성되었다.

이에 전빈협의 주체적 참여를 위해 지택연내 빈민지역 탁아소를 중심으로 도시빈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탁아운동을 빈민지역운동과 긴밀한 결합 속에서 강화하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 도시빈민여성의 제 과제를 도시빈민운동전영에서 실천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이다.

하계수련회 열려

지택연 소속 탁아교사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탁아활동가가 지녀야 할 품성과 탁아운동을 올바르게 풀이기 위한 정세분석, 탁아정책연구부의 상반기 연구성과 발표회를 가졌고, 심신단련과 동지애를 도모하기 위한 계룡산 등반대회를 훌륭히 치워내 그간의 많은 수련회 가운데 가장 멋있고 알찬 수련대회를 치렀다.

사회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활동에 참여

탁아예산에 포함된 사회복지예산과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낙후성에 대해 그간 개별적으로 대책활동을 벌여던

사회복지단체, 노동조합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그간 수차 준비모임을 가진 끝에 결정된 것은 하반기 사업으로 공동목표인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청회식 요구대회를 결의하고 지난 9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93년도 사회복지예산에 관한 공청회 및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또한 대통령선거 때 사회복지관련 활동을 논의중이며, 최현숙회장과 양은희부회장을 중심으로 대책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여민회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여성한마당

92여성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제주여민회에서는 92년 9월 19일, 20일 양일간 제민신협 2층 강당에서 '성폭력없는 여성한마당-우리 꽃물을 트자'는 주제로 여성대회를 열었다.

19일 오후 4시에는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부대표, 여연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 초청강연이 6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정기국회때 올바른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제주여민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주지역의 여론화를 위한 사업을 벌여나갈려고 한다. 특히 이번 법제정에 제주출신 환경대(민자당), 변정일(국민당)국회의원이 법사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점을 감안, 이들 국회의원을 상대로 올바른 법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활동을 펼쳐나

갈 예정이다.

20일 오후 2시, 4시 두차례에 걸쳐 김진관·김보은 사건을 그린 연극 '투구에 걸린 목'을 회원들의 한달 이상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무대에 올려 250여명이 관람하였다.

「제주여성」 21호 발간

제주여민회에서 두달에 한 번 발간하는 기관지인 「제주여성」이 9월 15일에 발간되었다. 발간해까지 작업하느라 고생한 편집실의 노력으로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제5기 신입회원 교육

교육부의 주관으로 상반기의 제4기 신입회원교육에 이어 제5기 신입회원 10명이 9월 5일부터 여성문제의 기원, 성과 사랑, 여성과 가족, 사회구조와 여성문제, 다양한 계층의 여성의 삶 등 각 부문별로 매주 1회 학습하고 있으며 수료는 12월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 공간인 '여성나눔터' 개소하다

공단지역의 일하는 여성과 지역주부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인 '여성나눔터'(인천시 북구 산곡동 소재)를 7월 4일 개소하였다. 그동안 여성나눔터 재정마련을 위하여 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이 남비세트 판매, 양말 판매 등을 해왔으며, 많은 후원자들이 전세금 마련을 위해 기금을 내 주셨다. 앞으로 여성나눔터에서는 풍물반, 여성강좌, 무궁해세계 판매 등 여성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아나갈 예정이다.

성폭력추방을 위한 강연회 및 가두 피켓팅 전개

인천지역에서는 성폭력이 하루 14건이 발생하는 등 6공화국 들어 성폭력문제가 일반여성의 삶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현실 앞에서, 인천지역 여성들이 단결하여 성폭력추방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였다. (전교조 인천지부, 참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 인천공부방연합회, 인천지역탁아위원회, 여성신문 인천지사, 인천대총여학생회 공동주최)

6월 7일에는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여 성폭력실태인원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신윤옥(여성의 전화 사무국장)씨가 주제강연을 하였고, 직장여성, 어린이 성폭력 실태보고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7월 1일에는 저녁퇴근 시간에 맞추어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성폭력 추방을 위한 가두 피켓팅과 선전선동전을 수행하였다. 플랭카드, 대자보, 전단 배포, 호신용 호르라기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폭력 추방을 선전하였으며 인천시민들도 대자보를 열심히 읽는 관심을 보여 주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기독교여성운동정책협의회 열려

기독교여성운동단체들이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통일성과 연대성을 모색하고자 준비해 온 기독교여성운동정책협의회가 비공식모임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열려 교계 안팎에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3월 19일 1차 모임을 거쳐 4월 30일 2차 모임을 통해 기독교여성운동의 지속적이고 정책협의회와 사업의 공유, 연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심체 역할의 필요를 절감하여 NCC여성위가 잠정적으로 그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중점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조화순목사 출판기념회

본회 여신학자 연구반에서는 3년여에 걸쳐 조화순목사와 민중여성들의 경험을 토대로 신학한 여성이 민중적 삶의 현장에서의 실천을 여성신학적 시각에서 신학화 해내는 작업을 시도하여 "고난의 현장에서 사랑의 불꽃으로"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출판기념회는 6월 1일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홀에서 열렸으며 박순경교수와 민영진박사의 서평, 김지선(인천여성노동자회)회장과 이효재교수의 축사가 있었다.

여성신학 한마당

사무실 구입기금 마련을 위한 세번째 행사로 올해는 출판기념회를 겸한 여성신학 한마당을 기획했다. 제1부에서는 "한국민간신앙에 나타난 여신상에 대한 여성신학적 조명"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 "희년통일과 여성신학" 등의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제2부에서는 여신학 문화제의 문화공연과 회원기증품 바자회가 열렸다.

월례강좌 열린다.

그동안 봄 가을로 3개월씩 매주 월요일에 진행해 온 월요강좌를 이번 가을에는 회원전체가 모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고 사업을 공유하며 참여의욕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달에 한 번 월례강좌로 진행하게 되었다. 월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9월 28일 : 여성민중목회 세미나(여

성민중목회의 흐름, 여성민중목회자의 현황 등)

10월 26일 : 노동, 자연, 여성신학 (예산사과농장 일일농장)

11월 30일 : 마리아론

여성신학정립협의회

제10차 한국여성신학 정립협의회가 오는 11월 6일~7일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성폭력과 기독교"(주제강사 : 이현숙)란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소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과 성서(이경숙)

성폭력과 기독교역사(한국임)

기독교현장과 성폭력사태(신윤옥)

성폭력과 여성목회의 과제(최영애)

싸이코드라마(김지숙)

한국여성의전화

개원 9주년 기념 공개토론회- '매맞는 아내, 깨어진 삶' 개최

지난 6월 11일 여성의전화는 개원9주년을 맞이하여 아내구타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사회여론화시키고, 그 해결을 위해 법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쉼터'의 필요성과 아내구타 문제의 해결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정영애 상담1부장의 아내구타 실태 보고에 이어 김주숙, 김일수, 이화수 교수의 아내구타 지속요인 및 대책이 논의되었던 이번 토론회는 아내구타의 실상을 알리는 커다란 역할을 해 내었다.

구타당한 피해여성들의 생생한 증언과 토론회에 전시한 매맞는 여성들의 사진들은 아내구타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공개토론회 행사와 관련된 자료집 '매맞는 아내, 깨어진 삶'이 발

간되었다.

17기, 18기 상담자 교육 실시

17기 상담자 교육이 4월 7일에 시작되어 6월 9일에 수료식을 가졌다. 17기 교육을 마치고 6월 17일부터 후속 교육일정에 들어가서 실제의 상담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이론학습을 하게 된다. 후속교육을 마친 17기 교육생들은 전화상담과 실습을 하고 현재는 직접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17기 상담자 교육에 이어 18기 상담자 교육이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15회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여성학, 상담학, 심리학 등에 관한 것으로, 18기 교육도 17기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수료후 후속교육으로 상담사례연구와 상담모의실습 등과 전화상담실습을 하게 된다.

쉼터 기금 마련을 위한 '장터' 열려
해마다 쉼터기금마련을 위한 재정사업과 자원재활용 운동의 차원에서 열리는 장터가 올해도 10월 9일에 열렸다. 장터는 새물건이나 쓰던 물건들을 후원자들에게 미리 기증받아 장터당일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물건들로 풍성한 장이 열렸다.

'쉼터' 보고서 발간

매맞는 여성들의 긴급피난처인 '쉼터'에 대한 자료집이 11월 말에 발간될 예정이다. 쉼터의 필요성과 의의, 쉼터통계, 상담사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쉼터전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충북여성민우회

성폭력추방사업 활발히 전개

92년 상반기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성화원, 김보은·진관, 충주 재활원 사건대책위에 적극 결합해 오면서 기자회견, 가두선전전, 재판참여, 탄원서제출 등의 활동을 전개해온 데 이어 청주 사직동 용화사 승려 폭행사건의 사건상담을 맡아왔다. 6월 23일, 24일에는 청주지역 노래운동단체 '녹두패'의 힘을 빌려 '상담전화 기금마련을 위한 노래공연-지금은 꽃이 아니어도 좋아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정신대, 양궁주, 기생관광, 지역성폭력 사건 등을 슬라이드와 시낭독을 곁들여 총체적으로 형상화한 문화행사로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지역통일가요제에서 '주부노래반' 1위 입상

7월 27일 결성된 범민족대회 충북 추진본부 주최단체로 참여해 회원교양토론회-여성운동과 통일운동, 통일맛이 공연, 지역문화제, 등반대회, 범민족대회에 적극 참여했는데 지역 12개 단위에서 출전한 가요제에서 당당 1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보이기도 하였다.

대중강좌 개최

7월 초 00동 아파트 주부대상으로 '우리식탁,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교양강좌를 개최한 데 이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광장으로서 클래식 기타 강습회와 풍물강습회를 개설, 진행중이다.

'92 하기운영위원회 MT 열어

9월 5일, 6일 양일간 열린 MT에선 성폭력상담전화 설치전, 거주지별 주부조직 건설을 하반기 주요사업 과제로 잡았다. 상담전화는 여민회내에 두고 준비주체는 운영위에서 하되, 주제역량을 모색하는 준비과정 동안엔 상근자들이 담보하기로 하였다. 주부사업은 청주한살림과 협조해 거주지별로 간담회, 강좌개설과 정기적 홍보지를 배포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

유엔환경개발회의의 한국위원회 환경주간행사 열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때를 맞춰 국내에서는 민간단체들이 모여 유엔환경개발회의의 한국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민우회는 주관단체로 참여했다. 유엔환경개발회의의 한국위원회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손으로'라는 슬로건으로 5월 25일에서 6월 5일을 환경주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환경기자재 전시, 국제세미나, 대규모공연 등의 행사를 가졌다. 민우회는 이 기간에 '유기농업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건강한 먹거리와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촉구했다.

제1기 어린이 환경학교 열리다.

어린이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하는 '제1기 어린이 환경학교'가 열렸다.

환경학교에서는 아이들과 관련된 공해문제에 대한 교수님들의 강의가

각 지역협의회별로 진행되고, 폐식용유 이용 비누 만들기, 재생종이 만들기 등의 공동실험이 있었다.

또한 충남 홍성에서 있는 2박3일의 나들이 프로그램에서는 땅을 살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현장실습을 가졌다.

노조사업부 회원을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견학을 위해 일본방문

민우회 노조사업부 회원들은 7월 29일부터 8월 4일에 걸쳐 일본의 사무직여성노동운동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회원들은 일본의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타카소 및 여성단체, 지역노동조합 등을 둘러보고 은행여성노동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긴박한 문제로 등장한 임시직, 신인사제도에 대한 토론회도 가졌다. 민우회 회원들과 은행노동조합, 증권사 노동조합의 여성간부들도 참여한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사무직여성노동자들의 권익확보 투쟁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뜻깊은 방문이었다.

'임시고용과 노동조합의 나아갈 방향' 정책토론회

민우회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용역, 파트타임, 일용직, 촉탁계약직 등 임시고용으로 우리 노동자 전체의 고용불안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널리 알리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9월 26일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기초발제(임시고용의 현실과 대응 방안: 최영희/민우회 지도위원), 현장사례발표(동아일보, 교통개발원), 일본사례 발표, 질의응답 및 노동조합의 대

용 방안을 둘러싼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민주회에서는 1991년에 사무전문직의 임시고용실태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를 한 바 있으며, 1992년에는 중요사업장의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해 왔다.

'선거보도감시 연대회의'에 참여

민주회는 지난 14대 총선에 이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선거보도감시 연대회의'에 참여했다. '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 회원들이 주축이 된 선감연 참여는 철저한 민주사회를 이룩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의 편파, 왜곡방송에 의해 시달렸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시야를 열두에 두고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선감연에는 한국여성민주회를 비롯하여 민주언론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대책위원회, 전국신문언론연구회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여성연구회

공동대표와 사무국원이 바뀐다

공동대표로 수고해 주시던 정현백, 장하진 선생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7월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공동대표로 이은영, 김명희 선생님을 선출하였다. 그밖에도 연구위원장과 4개분과장(노동, 이론, 가족, 문학)이 교체되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간사 2명도 바뀌었다.

월례발표회

그동안의 정기적인 월례발표회가 다음과 같이 열렸다.

4월:문학분과 이명호회원의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비역사적 여성상으로의 복귀 혹은 여성해방론의 실종'

5월:'로자 룩셈부르크'비디오 상연

6월:이병천선생의 강의'포스트 맑스주의와 맑스주의의 위기'

7월:회계연도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및 학기수련회

9월:강남식회원의 '여성사 방법론'

10월:강이수회원의 '1930년대 대기업 여성노동자의 상태에 관한 연구'발표 예정

'여성과 사회'3호 발간과

'한국여성사'-근대편(풀빛) 발간

지난 4월에 연구회의 연간지 '여성과 사회'3호가 발간되었고, 여성사분과에서 '한국여성사'-근대편을 발간했다. 또 8월에는 지금은 해체된 사회주의분과의 연구결과인 '사회주의 여성해방의 현재와 미래'(백두)가 출판되었다. 또한 최근 연구회에서 펴냈던 '여성학 강의'(동녘)는 3판을 찍기도 했다. 그리고 12월중에는 노동분과에서 여성고용에 관한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함께하는 주부모임

창립 3주년 회원 만남의 날 행사

함께하는주부모임은 지난 6월 창립 3주년 자축 기념행사로 '회원 만남의 날'을 가졌다. 1기부터 7기까지 배움마당을 거쳐간 모든 수강생을 초대하여 축하마당은 1부 기념식을 시작으로 2부"창조질서회복을 위한 인간이해"를 제목으로 한 강의, 3부"노래와 춤으로 뛰는 놀이마당"에선 판타마임을 걸들인 이색적인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자문위원님들과 대구여성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참인회 회원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한식부페로 꾸며진 회원님들의 음식솜씨는 대접은 끝없는 만찬이 되었다.

'주부학'공부를 여성반 주최로 시작한다.

제7기 배움마당 수료식에 이어 여성반 주최로 5주간 '주부학'공부를 시작하였다. "갈등기"를 주제로 택하고 박해인교수께서 이끌어 주시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맡아 토론형식으로 꾸며진 이번 공부는 역설과 풍자였던 주부들의 삶의 이야기로서, 회원들의 큰 관심속에서 주부의 삶을 되짚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제8기 배움마당 개최

30여명의 수강생이 등록한 가운데 제8기 배움마당이 열리게 되었다. 9월 1일 "주부갈등기"를 시작으로 11월 10일 역할극과 수료식을 끝으로 11번 갖게될 이번 교육은 주부학, 환경, 사회 등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과정중에는 공동체놀이와 좋은 노래 배우기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분단별 토론시간을 가지게 되며, 특히 이번 교육엔 30대의 연령층 주부들이 많이 참가하여 주부모임에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여성운동일지

(92. 3~92. 10)

- 3/17 UN인권위원회의 정신대 안전
상정과 미국에서의 여론화에
대한 경과 기자회견(정대협)
- 3/18 여연 "여성유권자의 올바른 주
권행사를 촉구한다"성명서 발
표
수요정신대정기시위(여연주
최)
- 3/21 "올바른 주권행사와 투표참
여"에 대한 범민주단체 기
자회견 및 가두캠페인 참가
- 3/23 김보은, 김진관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결촉구 진정서 공문
발송
"헌정권과 민자당의 안기부와
국군기무사를 동원한 정치공
작과 선거부정행위를 즉각 중
단하라"성명서 발표
- 3/25 14대총선 결과에 대한 우리의
논평 발표
- 3/31 '민주여성' 12호 발간
- 4/ 1 김보은, 김진관 사건의 1차 구
형에 관한 총주지침 항의면담
- 4/ 8 "이지문중위 석방촉구 및 군기
무사 선거부정에 대한 규탄대
회"참여(전국연합, 여연 공동
주최)
- 4/16 "여성운동과 통일운동"토론회
(여연 조동위와 기독교여성평
화연구원 공동주최)
- 4/20 "비공식부문 여성을 위한 경제
사업 방향과 방법론"연구모임
- 4/22 '정신대문제와 한·일 정부의
책임'정대협 행사 참여
'간통죄폐지는 시기상조이다'

- 성명서 발표(여연과 여연 공동
성명)
- 4/27 '간통죄폐지에 대한 공개토론
회'공동주최
(여연, 여협, 가법 공동주최)
여연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
특별위원회'발족과 기자회견
- 4/29 '14대 여성의 의회진출 평가와
향후방안'토론회(여연, 대한
YWCA, 교회여성연합회, 유
권자연맹 공동주최)
- 5/22 '보은·진관 무죄석방과 성폭
력특별법 제정 촉구대회'참여
(김보은·진관 사건 공동대책
위 주최)
- 5/26 '당대 여성의 지위보장 촉구'
를 위한 공문 발송-민자, 민주,
국민(여연, 교회여성연합회,
유권자연맹, 대한YWCA 공
동)
- 6/30 성폭력특위 기자회견'정부부
처 성폭력종합대책 수립안 및
각 정당의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방향과 공개질의의 건'
- 7/3 성폭력특위 기자회견'여연 성폭
력특위의 「성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안 발표」
- 7/12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발족
- 7/15 여연 성폭력특위주최 정당초
청 공개토론회'성폭력법안 무
엇이 쟁점인가!'
- 7/16 '성폭력추방운동자료집'발간
(1집)
- 7/31 '성폭력대책에 관한 특별법'입
법청원

- 8/ 7-8 하기정책수련회 개최'전환
기의 한국사회와 여성운동의
과제'
- 8/10-11 정대협주최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참가
- 8/12 정신대 연합 집회
- 8/27 '성폭력추방운동자료집'발간
(2집)
- 9/1-6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
할'평양토론회
- 9/ 4 국민회의 준비위원회 발족식
참여
- 9/17 MBC파업 지지광고 및 성금
전달
- 9/18 '방위비 삭감과 복지비 확대'
를 위한 국회의사당 앞 집회참여
- 9/19 MBC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
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참여,
기자회견 참여
- 9/19-10/9 '92년 여성주간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개최
- 9/26 국민회의 발족식 참여
MBC공권력규탄과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가두선전
- 9/28 MBC공정방송을 위한 시청자
대회 참여
- 10/ 2 MBC공권력투입에 따른 규탄
대회 참여
- 10/ 5 MBC공권력투입에 따른 규탄
대회 및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가두선전 참여
- 10/14 '올바른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가두서명 실시
- 10/17 여연'정신대 아리랑'문화제
개최

민주 여성

1992년 10월 통권 제13호

민주여성 1992년 10월 제13호
발행 : 한국여성단체연합
발행인 : 조화순
편집인 : 나영희
발행일 : 1992년 10월 23일
주소 : 서울시 중구 정동 1-23
전화 : 738-2883